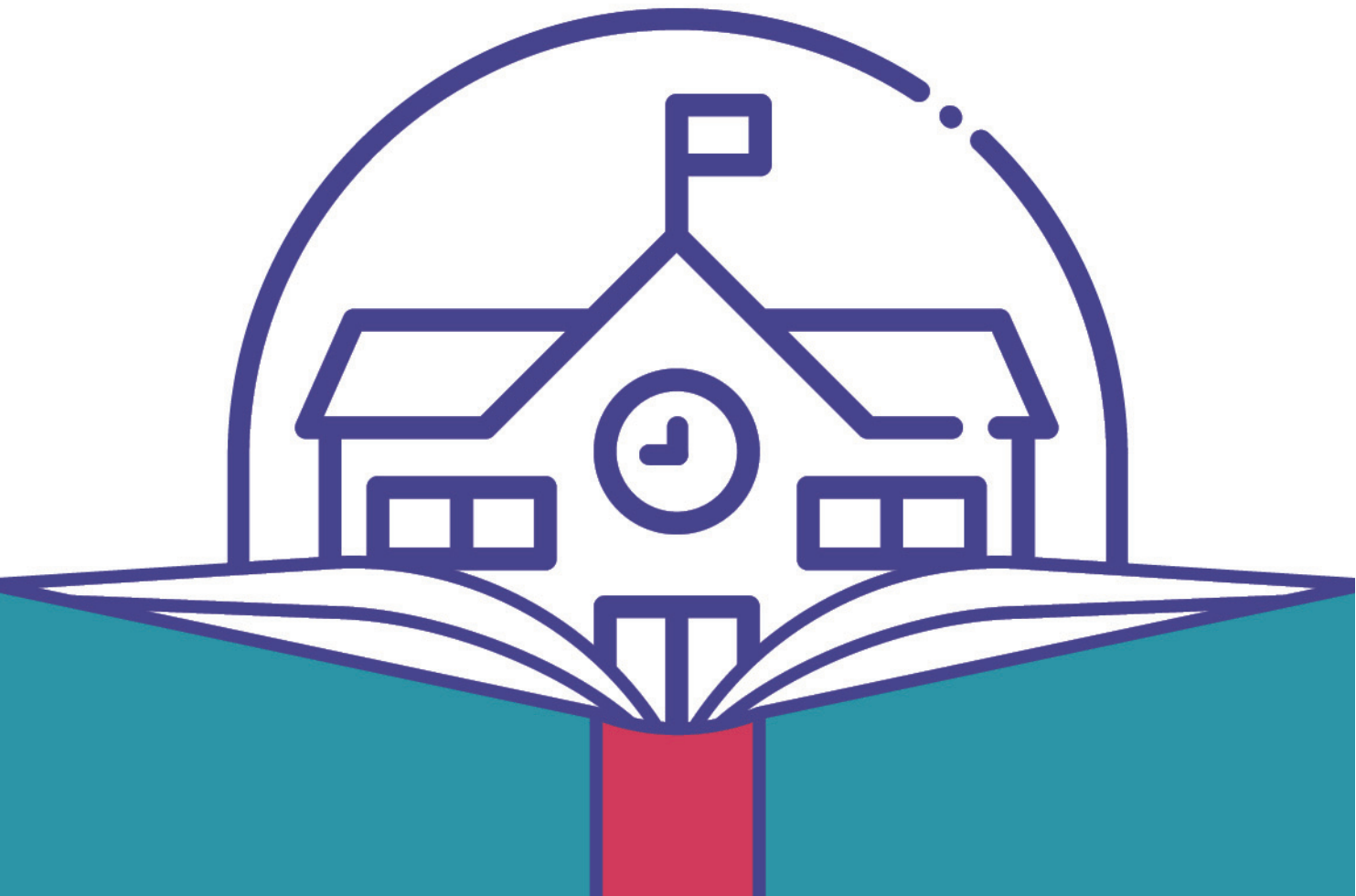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가이드북 활용 시 유의 사항

본 매뉴얼은 202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7. 1)을 바탕으로 **경기도 내 사안 처리에 적합하게 수정·보완된 매뉴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교육부 지침, 여성가족부 매뉴얼 등을 종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관련 법률 약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처벌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법」



I	학교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1
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3
2.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7
3.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14
4.	판례로 보는 성희롱·성폭력	18
II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의 역할	23
1.	법에 따른 학교의 역할과 의무	25
2.	학교의 역할과 의무 세부 추진 내용	28
III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발생 통보	39
1.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및 발생 통보	41
2.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무 근거 법령 및 세부 내용	42

IV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의 개관	47
1.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49
2.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위원회	50
3.	피·가해 대상별 사실확인 및 위원회 운영	51
4.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시 주체별 역할	52
V	피·가해 대상별 사안 처리 절차 실무	55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57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75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84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91
VI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95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이해	97
2.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대화 및 지원	99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의 이해	102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원 기관 안내	108



| VII | 부록

117

[001] 상담일지	119
[002]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서	120
[003] 민감정보처리 동의서(신고인)	121
[004] 전문기관 연계 의뢰서	122
[005]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123
[006] 출석 통지서	126
[007] 서면 진술서	127
[008] 비밀유지 서약서	128
[009]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신청서	129
[010] 사실확인 문답서(피신고인)	130
[011]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	131
[012]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촉(임명)장	132
[013]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133
[014]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 위촉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134
[015] 성고충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135
[016-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136
[016-2]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137
[017]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138
[018]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나리오(예시)	140
[019]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147
[020] 심의결과 통보서	148
[021]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보고	149
[022]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154

표 목차

〈표Ⅰ-1〉 성희롱과 성폭력의 법령상 비교	3
〈표Ⅱ-1〉 성고충상담원 지정 예시	31
〈표Ⅱ-2〉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예시	33
〈표Ⅲ-1〉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및 발생 통보	41
〈표Ⅳ-1〉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위원회	50
〈표Ⅳ-2〉 피·가해 대상별 사실확인 및 주관 위원회(기관)	51
〈표Ⅴ-1〉 교직원[피해]-교직원[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기관)	57
〈표Ⅴ-2〉 성고충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안)	68
〈표Ⅴ-3〉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치	69
〈표Ⅴ-4〉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예시	72
〈표Ⅴ-5〉 학생[피해]-교직원[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기관)	75
〈표Ⅴ-6〉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예시	82
〈표Ⅴ-7〉 교직원[피해]-학생[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	84
〈표Ⅴ-8〉 학생[피해]-학생[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	91

I

학교

성희롱·성폭력의 이해

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2.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3.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4. 판례로 보는 성희롱·성폭력



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가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법적 근거

‘성희롱’이란
 타인에게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함.
 - 상대방에게 이러한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포함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신체적·심리적·경제적)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본 매뉴얼에서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되는 성범죄로 한정함.

〈표 I -1〉 성희롱과 성폭력의 법령상 비교

성폭력	구분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법 ·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행위 일체로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을 포함 	법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손해배상 	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기관 내 징계, 손해배상

-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않는 행위로 성적 자율권(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로 모두 법률로서 금지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성희롱 관련 법률과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는 입법목적에 따라 혐의의 성폭력(성폭력 범죄)와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음.
- 성희롱은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

참고

[판례로 보는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희롱은 사안에 따라 기관 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동시 적용받을 수도 있음. 형사처벌 되지 않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 내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음.



 **참고**

[판례로 보는 내부 징계의 효력]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 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중략)…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2호 (가)목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을 함께 금지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참고**

[판례로 보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2018. 4.경 중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피해아동 공소외 1, 공소외 2 등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자는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나와야 할 데는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아동 공소외 3을 강당 무대에 세워 두고 피해아동 공소외 4 등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소외 3은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참 예쁘다.”라고 말하고, 2018. 3. 내지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공소외 5 등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소외 5는) 내 세컨드잖아.”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중략)…피고인의 언행은 남·여학생들이 한 자리에 있는 수업시간에 일반적인 여성 또는 피해아동 공소외 3의 신체를 성적인 시각으로 대상화하여 평가하거나 피해아동 공소외 5에 대해 내연녀를 일컫는 속된 표현으로 칭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실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5328 판결

나 성희롱·성폭력 개념의 적용 시 유의 사항

● 학생 관련 사안

- 학생이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은 관계법상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것 이외에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징계, 조치 및 선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직원 관련 사안

- 교직원이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은 관계법상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것 이외에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피해 교직원 보호, 가해자 징계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성폭력과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는 ‘학교폭력’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학교폭력의 개념에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음.

● 성폭력과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할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을 우선 적용하여 처벌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 본 절에 제시된 예시는 대표적인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일부이며, 예시된 행위가 아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가 행위유형별 분류

성희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으로 구분됨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성희롱의 유형	행위의 예시
육체적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에 손 두르기와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 “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 “일탈(성 행위 은어) 할래?”
시각적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행위 - 다른 직원 및 학생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반히 쳐다보는 행위 등
기타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유·무선 연락 등 포함)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출처: 여성가족부(202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일부 발췌

* 사안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톱킹에 해당할 수 있음

**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등에 해당할 수 있음

- 1) 참고 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2020.9. 교육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참고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청소년 개입 매뉴얼(2020.9.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참고 3. 학생을 위한 성폭력 신고 가이드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폭력

강간

정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행위
행위의 예시	-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 - 거절하기 어려운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

유사 강간

정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상대방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가 아닌 다른 것을 넣는 행위
행위의 예시	- 강제로 구강성교, 항문성교 하는 행위 -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이나 물건을 넣는 행위

강제추행

정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또는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행위의 예시	- 기습적으로 키스 등 스킨십을 하는 행위 - 기습적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얼굴, 머리, 팔뚝, 등을 쓰다듬는 행위 - 엘리베이터에서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참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의 적용]

- 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해당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간음, 추행이 성립함.
- ②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 가해자가 19세 이상 성인이고,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되는 미성년자라면 19세 이상 성인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동의를 받고 한 경우라도 모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 성립함.

[판례로 보는 청소년에 대한 기습추행]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여, 17세)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의 관계, 갑의 연령과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갑의 반응 및 행위가 갑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갑을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2.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3.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4. 판례로 보는 성희롱·성폭력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팔이 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갑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며, 그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는데, 마침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몸을 껴안는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 준강간·준강제추행

정의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상대방의 심신상실(장애, 수면, 술에 취함, 의식 잃음) 또는 항거불능(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행위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이 든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행위 - 술에 취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행위 -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패싱아웃’(음주 후에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에서 더 나아가 의식이 상실돼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인 사람을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행위

● 성학대

정의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행위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애무에 의한 성행위 등) - 아동·청소년에게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관찰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디지털 성범죄

정의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
행위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사진 및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 등을 합성 및 유포하는 행위 - SNS 및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 등

 참고

[디지털 성범죄]

- 2020년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된 바 있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기반의 상황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스토킹, 주거 혹은 공공장소 침입, 강간, 준강간, 집단 강간 등의 현실(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밀접하게 연결됨
- ‘조건만남’과 같은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와도 밀접하게 관련됨
- 유형

유형	성격	적용법률	예시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형/직접 촬영형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촬영물 유포/ 재유포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 유포자가 직접 촬영대상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 촬영대상이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 등과 같이 촬영 당시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각각 촬영자는 미성립하더라도 동의없이 유포시 유포죄는 성립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제3항,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인 등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성관계, 자위, 누드 등)을 동의 없이 유포 · 몰래카메라 등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유포
허위 영상물 (합성·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딥페이크, 지인능욕 등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여인과 결별 후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다른 촬영물을 취득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의 방식으로 소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포된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처벌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사이버공간 또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 게임 내 성희롱 · 단독방 내 성희롱

출처: 여성가족부(2025)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 **그루밍(Grooming)**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해자가 일정 기간 피해자를 길들인 뒤 행하는 성폭력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폭력·성범죄를 제 3자에게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온라인 그루밍) 성인이 성적착취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행위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게 친밀하게 대하면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행위 -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노출행위,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그루밍의 여섯 단계 (출처: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 고르기: 가출, 방임 등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함 2. 피해자의 신뢰 얻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하며 신뢰를 얻음 3. 욕구 충족시켜주기: 선물을 주거나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등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함 4. 고립시키기: 개인교습, 짧은 여행 등 아이가 보호자와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의존성을 키움 5.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등 성적인 관계 만들기 시작함 6. 통제 유지하기: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는다.', '주변에 알려겠다.' 등 협박·회유로 성적인 관계를 이어감

참고

[온라인 그루밍]

- 온라인에서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는 것,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판례로 보는 그루밍]

피해자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교우환경에 기인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자신과 비슷한 가정환경을 가진 피고인 A와 친분관계를 맺게 되면서 상당한 위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와 함께 연예계 데뷔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꾸며낸 연예기획사 대표의 지위를 상당히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연예계 데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친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거나 부당한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정신적·심리적으로 종속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이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피고인 A의 회유에 의하여 V와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도 거부하며 피고인 A가 처벌받지 않게 하는 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중략)···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의존하자 부당한 계약일지라도 계약상의 구속력에 따라야만 한다고 잘못 알고 위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총 13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2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649 판결

기타 유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함. (「형법」 제303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함.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출처: 여성가족부(202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중 일부 발췌



나 대상자별 분류

친족 성폭력

정의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및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임. 특히 친족 성폭력의 가해자는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연령이나 가족 내 지위가 주는 권위 등을 이용함 - 친족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10대~20대이며, 아버지(친부와 의무)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음. 대부분 유아 또는 아동기 때 시작되어 청소년기 및 성인기까지 지속됨 - 지속적 피해를 경험하며,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가해자들이 폭력, 협박 및 신뢰와 친밀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큼 - 가족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움. 다른 가족이 알게 되거나 피해가 드러났을 때 피해자가 비난을 받거나 피해를 묵과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교제 폭력*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제 폭력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의미함 · 교제 폭력의 예시: 폭언과 욕설, 뺨을 때리거나 손찌검하는 행위,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구타하는 행위, 성관계 사실과 교제 중 만남 비용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위, 교제 상대를 위협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함 - 교제폭력은 '사랑싸움' 등으로 축소되기도 하며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는 개인정보와 취약점이 가해자와 공유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함

참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교제폭력' 범행은 흔히 말하는 사랑싸움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의 일종으로,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 증오, 원망, 소유욕 등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결국 중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사회적 폐해가 큰 심각한 범죄이다.

울산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노335, 1016(병합) 판결

3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가 2차 피해의 개념 및 법적 근거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가해자에 대한 옹호 등의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2019. 12. 25.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2차 피해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 2차 피해의 개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남성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도 성립됨
-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용자에 의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및 인사 조치를 금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누설이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차 피해를 규율함²⁾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참고.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및 해설 (2021 여성가족부)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 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 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고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참고

[판례로 보는 2차 피해]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나 2차 가해(피해)의 양상

2차 가해(피해)의 유형	행위의 예시
사용자·관리자·상담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등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여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 -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

출처: 여성가족부(2023)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1.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2.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3.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4. 관례로 보는 성희롱·성폭력



참고

[2차 피해를 주는 표현 (예시)]

“그때 싫다고 왜 말을 못 하고 이제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길 왜 따라갔어? 네가 여지를 준 것 아니야?”

“가해자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겨우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문제 삼아?”

“합의 안 해주면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평소에 교복을 짧게 즐겨 입었잖아”

“솔직히 너도 어느 정도는 좋았잖아?”

“저 정도 사과했는데 좀 받아 주지 그래? 가해자도 사람인데 불쌍해.”

“거기가 어디라고 여자애가/남자애가 따라가.”

“피해자인데 왜 웃고 다녀? 넌 피해자답지 못해.”

4

판례로 보는 성희롱·성폭력



가 성희롱 관련 판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 중징계

-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복도에서 피해자 A(15세)로부터 초코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음.
- 피고인은 수업 시간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칠판에 좌표를 그리면서 포물선을 여성 가슴 모양으로 그린 후 “아이참,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라고 말하였음.
- 피고인은 수업 시간에 낮은 피해자 B(15세)와 함께 수업하기 위해 교실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리 더 이뻐졌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에 대고 깍지를 끼었음.
- 피고인은 수업 진행 중 방학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학생들과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 C(14세)가 방학 중 피해자 D(14세) 등과 함께 워터파크에 갔다는 말을 하자 “너희들 비키니 입었어?”라고 말하였음.
-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중징계를 받음.
- 법원은 이러한 징계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고 징계처분이 적합하다 보았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고정1315 판결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 출석정지 10일

- 원고는 **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는 해당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임.
- 원고는 학교 음악실에서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선생님, 섹시한 거 보여드릴까요?”라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원고의 위 발언을 제지한 다음 수업을 진행함. 당시 원고는 앞을 여미는 지퍼가 있는 후드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내의나 별도의 상의를 입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발언 이후 피해자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위 점퍼의 지퍼를 가슴 중간까지 내리는 행동을 함.
- 피해자는 수업을 중단하고 원고를 복도로 불러내어 위 발언과 옷차림을 지적함. 원고는 허리에 손을 올린 채 피해자의 지도를 받다가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재차 원고를 교실 밖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교실 앞문으로 들어간 사이에 원고는 팔짱을 낀 채로 뒷문 벽에 몸을 기대어 피해자의 추가 지도를 기다림.



- 피해자는 해당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 및 교사의 지도 중 불량한 태도를 보였음을 이유로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출석정지(10일) 조치 및 원고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20시간) 이수 등의 조치를 결정함.
- 원고는 해당 조치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해당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0182 출석정지 10일 등 조치 무효확인 의 소

나 성폭력 관련 판례



강간 |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4세), 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E에게 “옆방에 가 있어.”라고 말하여 안방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으니 그걸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기 싫다,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 처벌: 소년법에 따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강간 | 가출한 청소년이 지낼 곳이 없어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강간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당시 15세)와 채팅을 하는 중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가출하여 정해진 숙소가 없이 모텔이나 노래방을 전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채팅 어플을 통하여 “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널 만나기 위해 내가 있는 지역인 ##로 내려갈 테니 꼭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함.

피고인은 ##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주겠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근처의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내일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당장 지낼 곳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나랑 성관계를 하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함.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11. 5 선고 2020고합80 판결

- 처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준강제추행 |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

피고인은 C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여, 18)는 1년 전 피고인이 담임이었던 반의 학생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일 때부터 '미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와 여러 개의 약속을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음. 그 약속 중의 하나로 피해자가 졸업한 후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어느 한 사람이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무박 드링크'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1:1 E 채팅창에 공지사항으로 띄우기도 함.

피고인은 D가 졸업 후 대학 진학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학교를 찾아오자, '무박 드링크'를 하기로 약속하자고 재차 말함. 이후 피해자와 약속을 잡고 연극관람을 한 후, 고깃집을 시작으로 세 차례 식당을 옮기며 술을 마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호불상의 DVD방에 데려갔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보이자,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짐.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고합519 판결

- 처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강제추행 |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등 부위,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

피고인은 F중학교 교사임. 피고인은 F중학교 복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의 머리와 등 부위 중 브래지어 끈이 가로지르는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교실에서 사물함 부근에 서 있는데 뒤에서 등을 치고 쓰다듬는 행위(E), 점심 식사 후 교실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밥 먹었니?' 하면서 어깨동무하듯 어깨 부분을 툭툭 치면서 건드린 행위(F),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어디 가냐?'고 묻는 행위(G),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점심밥 잘 먹었어'라고 물어본 행위(H), 복도를 지나가는데 '밥 많이 먹었어?'라면서 손바닥으로 어깨에서 등까지 쓰다듬은 행위(I), 아침 조회가 끝나고 화장실을 하고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으며 '열심히 하네'라고 말한 행위(J), 과학 시간에 학습지를 풀게 한 후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는 행위(K) 등 총 4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3명을 추행함.

수원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80 판결

- 처벌: 벌금 3,0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강제추행 | 한의사가 치료하면서 추행

피고인은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한의원에 손님으로 갔음. 피고인은 D한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기가 약해진 이유가 뭘냐, 학교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너를 위로해 주겠다. 일어나 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나를 안아봐라, 아래 부위에 밀착시켜 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당황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보보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수원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9고합10 판결

- 처벌: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



미성년자 위력 추행 | 예체능 교수였던 자가 수업 지도를 빙자하여 추행

피고인은 B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근무하였고, 국악과 제자였던 C(가명)의 부탁으로 C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에 대한 대학입시 지도를 맡게 됨.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복식 호흡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배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슴, 어깨가 움직인다. 안아봐라.”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배와 피해자의 배가 닿도록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숨 쉬는 것을 느껴봐라.”라고 말함.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느껴봐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거는 수업 공부이고 절대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끌어안음. 피고인은 국악 교육을 빙자하여 1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함.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합538 판결

- 처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피고인에 대한 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운영과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



미성년자 위력 추행 | 학원 원장이 원생인 피해자에게 어깨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추행

피고인은 'D'라는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16세, 여)는 학원의 학원생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평소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학원에서, 수업 도중 피해자에게 피곤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누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별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

춘천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고합57 판결

- 처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 계부인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회 간음

피고인은 피해자(여, 당시 15세 내지 16세)의 계부임.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보육 기관에 살다가 친모,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부모와 같이 살게 되면서 다시 보육 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질 것을 염려하여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뒤 7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

수원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고합76 판결

- 처벌: 징역 7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 F가 운영 중인 트**, 텔**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일대일 대화를 통하여 F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 캡처 사진을 받아봄. 피고인은 F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 F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759개가 포함된 K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함.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단2805 판결

- 처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통신매체이용음란 |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

- 처벌: 징역 1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

II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의 역할

1. 법에 따른 학교의 역할과 의무
2. 학교의 역할과 의무 세부 추진 내용



1

법에 따른 학교의 역할과 의무



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성희롱과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 지침을 마련하며,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세부 추진 내용 → II.2.1]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세부 추진 내용 → II.2.2]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세부 추진 내용 → II.2.3]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세부 추진 내용 → II.2.4]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성고충상담원') 지정 [세부 추진 내용 → II.2.5]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성고충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 [세부 추진 내용 → II.2.6]
 -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세부 추진 내용 → II.2.7]

2)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통보

-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이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 등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세부 추진 내용 → II.2.7]

● 근거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 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성희롱 사건 재발 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5.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6. 해당 기관·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 학교의 역할과 의무 세부 추진 내용



- 학교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방지(예방) 조치를 통합하여 계획, 추진할 수 있음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 및 방지(예방) 조치 결과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에 입력 (제출)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 대상별 내용

구 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대상	필수	-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 포함)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중·고등학생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초·중·고·대학생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초·중·고·대학생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선택		학생	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생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연 1회, 1시간 이상	

※ 대상 및 횟수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문화



● 방법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대상별 예방교육 실시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성폭력방지법」 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예방교육의 경우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교 현황의 교직원에게 포함되는 사람은 교원, 직원 외 배움터 지킴이, 사회복무요원, 방과후강사, 교생 등이 포함됨
-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교육 방법으로 대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
- 주제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교육 방법, 대면 교육 시 강사와 사전 협의 후 강의계획서 작성

2)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방법 | 성희롱 방지조치와 성폭력 방지조치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내용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
-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성희롱·성폭력 고충담당자(성고충상담원) 지정
-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시행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3)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방법**

- 성희롱 예방지침과 성폭력 예방지침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참조하여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제정

참고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주요 내용 [부록 22]

제1조 목적	제10조 통보 및 신고의무
제2조 적용범위	제11조 조사
제3조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제12조 조사결과의 보고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제13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제14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 고충상담창구	제15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7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16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제8조 예방교육	제17조 징계
제9조 고충상담	제18조 재발방지조치 등

▶ **내용** | 다음 사항을 포함

참고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주요 내용 [부록 22]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방법**

- 독립된 공간의 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
 -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학교는 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하되 독립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음. 단, 고충상담은 비밀 유지가 가능한 곳에서 진행



-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
 -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학교는 제외
 - * 학교 홈페이지 등에 교육지원청·도교육청의 사이버신고센터 안내·연계하는 방법 가능
- 고충접수 처리 대장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신청서를 비치하도록 함

5) 성희롱·성폭력 고충담당자(성고충상담원) 지정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지정 방법

- 총 2인 이상(남·여 각 1인 이상 포함)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고충 신청자와 동일 성(性)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교직원 중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동일 성(性)으로 2인 이상 지정 가능
-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고충상담원 지정 가능
- 아래의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지정

요건(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인지적 태도를 갖추고 있어서 사안처리에 적극적인 교원 · 성희롱, 성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교원 ·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는 교원 · 공정한 판단 능력과 태도를 갖춘 교원
---------------	---

<표 II-1> 성고충상담원 지정 예시 *학교 규모와 구성 등에 따라 다름

고충상담창구	담 당 자			비 고
	직	성명	성별	
○○상담실 / △△센터	○○부장		남	
	○○교사		여	

● 성고충상담원의 역할

- 피·가해교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피해 고충상담
- 사안에 대한 신고·접수
-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 * 피·가해 대상별 사실 확인·사안 처리 담당자 및 기구에 대한 세부 설명
- [IV.3. 피·가해 대상별 사실확인 및 위원회 운영] 참조
- 성고충상담원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되어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

- 교직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화해 및 중재 절차 진행
- * 외부의 화해 및 중재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p>피해교직원이 화해 및 중재를 원하는 경우 성고충상담원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교직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대한 의견(신고 사실 및 피해자의 요청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 가해교직원의 합의 의사 등을 확인 · 피해자 의사에 따라 성고충상담창구를 통하여 화해 및 중재 진행 가능 ※ 주의 : 동의 없이 피해교직원과 가해교직원을 대면시키지 않음 · 상담 단계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신청하지 않고 행위자와의 조정 및 중재에 의한 해결을 원하거나 조사 개시 후에도 피신고인과의 조정·중재를 원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하고 화해 및 중재 시도 가능 · 피해자는 화해 및 중재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성희롱이 재발했다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 화해 중재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과정 중 조정이 결렬되어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즉시 조사 절차로 전환하여야 함
---	---

☛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성고충상담원) 교육

- 단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훈련의 시기와 횟수를 명시해야 함
- 신규 지정된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은 3개월 이내에 성고충상담원을 위한 직무 교육을 이수 하되, 교육기관에 의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에 따르면, 교육 수료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를 이수자로 인정 하고 있음. 재지정된 고충상담원은 3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함

6)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 단위 학교에서의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성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를 포함하여야 함
-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학교는 3인이상으로(외부위원 1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특정 성별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는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 * 관리자(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가 가해자인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상급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함
-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함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구성권자	구성방법	구성범위	비고
학교장	임명 또는 위촉	7명 이상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 포함)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학교는 축소하여 구성할 수 있음

〈표 II-2〉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예시 *학교 규모 및 여건에 따라 다름

성고충심의위원회	직위	성명	성별	비고
1	위원장	교감	여	
2	위원	○○부장	남	
3	위원	○○부장	여	
4	위원	교사	남	
5	위원	교직원	남	
6	위원	변호사	여	외부위원
7	위원	○○성폭력상담소 소장	남	외부위원
간사	성고충상담원	○○교사	여	상담 및 사실 확인에 참여한 고충상담원은 당해 사건의 위원이 될 수 없음



성고충상담원을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나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한 성고충상담원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객관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충상담원뿐만 아니라 상담 및 사실확인 등 사안 처리 과정에 관여한 내부 구성원, 외부전문가 역시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담 및 사실확인에 참여한 성고충상담원 등을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시켜 상담내용과 사실확인 과정에서의 쟁점을 보고하게 하여, 심의위원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은 것은 가능합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지위 및 심의사항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피해자의 보호,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자체 지침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비법정 기구임
- *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권고 및 의견제시의 형태이며,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과 구분됨

심의사항 예시

- ①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③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④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해촉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하며, 성고충상담원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음
- 학교장은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소집

- 소집 주체: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 소집 요건: 다음의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심의
 - * 성고충심의위원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세부 설명은 [V.1.3단계] 참조
- 개최 기한: 위 사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완료(최대 10일까지 연장 가능)해야 함. 사실확인이 완료되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 개최통지 방식: 신고인·피신고인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통지(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제척: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위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됨. 제척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심의 없이 곧바로 회의에서 배제됨

(제척 사유)

- ①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신고인·피신고인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피: 위원에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피신고인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기피 사유)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회피: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음. 회피를 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회에 회피 사유를 밝히고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에서 참여하지 않음

● 개의·의결 및 심의방식

-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
- 심의는 대면 회의 진행을 원칙으로 함.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신고인·피신고인에게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다만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출석 진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 진술로 대체 가능
- 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인·피신고인 동선 및 대기실을 분리하여 운영

● 성고충상담원 및 성고충심의위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관련 법령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 법령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부여됨.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안 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성고충상담원, 성고충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은 교직원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 그 밖의 비밀 누설 금지 근거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 * 성고충심의위원회 비밀 유지 서식 [부록 14] 참조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유지 서약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사안 내용과 관련하여 외부로 누설되는 경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될 수 있을뿐더러,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고충상담원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보장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위원들에게 사안 처리와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수당과 여비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름
- 정보공개
 -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함

7)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시행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발생사실 통보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 ※ 발생사실 통보는 [V.1.1단계] 및 [부록5] 참조



●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재발방지대책 보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발생사실 통보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보고는 생략할 수 없으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성폭력방지법」제38조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
 -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은 [V.1. 5단계] 및 [부록21] 참조
- 단,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제1항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

●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III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발생 통보

1.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및 발생 통보
2.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무 근거 법령 및 세부 내용



1 |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및 발생 통보



〈표Ⅲ-1〉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 및 발생 통보

대상별	신고 접수 및 보고		발생 통보 (여성가족부에 발생 통보)
학생(피해) - 학생(가해)	1) 인지 및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보고 (학교폭력) 4) 수사기관 신고	(성폭력 발생 통보) 단, 피해자 명시적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제외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1) 인지 및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보고 (학교폭력) 4) 수사기관 신고	(성희롱·성폭력 발생 통보) 단, 피해자 명시적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제외
교원(피해) - 학생(가해)	1) 인지 및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보고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발생 통보) 단, 피해자 명시적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제외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1) 인지 및 상담	2) 신고 접수 3)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보고 4) 수사기관 신고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 피해자 명시적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제외	(성희롱·성폭력 발생 통보) 단, 피해자 명시적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제외

※ 사안 신고 접수 48시간 내 관할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사안부서에 모두에게 보고

※ 구체적인 신고 방식 및 내용은 [V.1.1단계] 참조

*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보고 및 여성가족부 통보 서식 → [부록5]

2 | 성희롱·성폭력 신고 의무 근거 법령 및 세부 내용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신고 의무

1) 성범죄 신고 의무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상 교육현장(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관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의 자
- 기관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파견 근로자, 방과후강사, 봉사자 모두 포함

-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성폭력방지법」 제9조 제1항

-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자(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피해자 고소권 행사 여부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전혀 별개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 다만,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됨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참고

[수사기관 신고 시 유의 사항]

- 부모가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 신고 의무자인 학교(교장, 교사)의 역할과 부모의 법적 책임을 고지해야 함
- 신고하기 전 피해자에게도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급적 설명해 주어야 함
-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마음은 무엇인지, 신고하면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는지 등 잘 들어주고 신고 후 과정 안내, 피해 지원, 신고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접수한 해당 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학교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함

2)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 「성폭력방지법」 제3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아동학대 처벌법」 제63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기관장 및 종사자 간 보고는 이루어졌으나 누구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신고자 보호 제도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이런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함
「성폭력처벌법」 제23조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종류

- 관련 법령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 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법 제7조)
 - ◆ 예비, 음모(법 제7조의2)
 -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
 -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 제8조의2)
 - ◆ 강간 등 상해·치상(법 제9조)
 - ◆ 강간 등 살인·치사(법 제10조)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법 제11조)
 -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법 제12조)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 제13조)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법 제14조)
 - ◆ 알선영업행위 등(법 제15조)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③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④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출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여성가족부, 2022)



나 교원·직원 대상 성폭력범죄 신고 의무

1) 성범죄 신고 의무

- 학교장과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간음)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성폭력방지법」 제9조 제2항

2)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성폭력방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3) 신고자 보호 제도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이런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함
「성폭력처벌법」 제23조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 학교장 등은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방지법」 제8조, 제36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V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의 개관

1.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2.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위원회
3. 파·가해 대상별 사실확인 및 위원회 운영
4.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시 주체별 역할



1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 단계별 세부 내용은 사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 |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위원회



〈표Ⅳ-1〉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별 위원회

구분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처리사안	학교폭력 사안	학교규칙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한 사안	교직원과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안	교원이 피해자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희롱·성폭력) 사안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학교규칙 (「초·중등교육법」관련)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관련)	「교원지위법」
지위(성격)	법정기구	비법정기구	비법정기구	법정기구
설치단위 (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피해자보호, 재발방지,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3 | 파·가해 대상별 사실확인 및 위원회 운영



〈표Ⅳ - 2〉 파·가해 대상별 사실확인 및 주관 위원회(기관)

피해 \ 가해	학생	교원	직원
학생	(파·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원	(가해(침해)학생) 교권보호위원회*	(가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피해교원) 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피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피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직원	(가해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가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피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피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피해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처분까지 가능

- 위 사실확인 주체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학교폭력예방법」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원지위법」 및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등에 따른 것으로서 표준적인 예시임
- ※ 사실확인을 위한 각종 양식은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우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의 양식 활용

4 |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시 주체별 역할



- **피해자가 학생인 성희롱·성폭력 사안**

 -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따라야 함
- **피해자가 학생, 가해자가 교직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

 -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따라야 함
 - 가해 교직원에 대한 사실확인 은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 및 교육지원청 피해조사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피해자가 교원, 가해자가 학생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따라야 함
- **피해자가 교직원, 가해자가 교직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

 -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상담을 실시함
 -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학교에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교육지원청 피해조사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가능
- **피해자가 직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

 -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상담을 실시함
 -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학교에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교육지원청 피해조사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 개최 가능
- **학칙 위반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사안**

 - 생활인권업무담당자가 사실확인을 실시함



가 학교 차원

학교장

-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 총책임자로서 사안의 정확한 파악, 사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련 구성원 소집 및 업무지시, 그 결과를 수시 보고 받고 모니터링 실시
- 소문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와의 의사소통창구 일원화
- 사안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글 등은 오히려 소문 유포나 언론보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검토
- 상호 존중,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장이 먼저 나서서 노력해야 함
- 학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외 사각지대(기숙사 등)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예방 활동에 노력해야 함

참고

[학교장의 유의 사항]

- 법에 정한 신고의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나 교사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신중한 대응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는 교원을 사건 처리 창구로 일원화하되, 업무 과중 및 교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학교장은 평소에 학교 내 양성평등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며, 사안이 발생했을 시 사안 처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안대응의 모든 단계에 적극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함

교직원

- 교직원은 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학생의 요구사항과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함
- 피해회복과 더불어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성폭력전담기관 등 전문기관과 신속하게 협력 필요
-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야 함
-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문의 및 상담을 해야 함
- 다른 교사나 학생들에게 신고 사실이나 내용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학교 구성원들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지 및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킴

▶ 성고충상담원

- 성희롱·성폭력은 축소·은폐되거나 재발, 지속될 수 있으므로 학교장과 성고충상담원의 사안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중요
- 교직원 간 성희롱 사안일 경우 학교 내부의 성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교내 창구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상급 기관 및 외부 기관 연계 및 안내
- 교내 상담창구의 이용과 소송 등 외부절차를 병행할 수 있음을 상담 과정에서 안내

나 교육지원청 차원

▶ 사안처리 담당자

-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 밀착 지원
- 피해자 초기 상담 22개 업무협약 성폭력상담소 연계 지원
- 교육지원청 피해조사위원 학교 즉시 파견하여 조사 지원
- 언론보도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
-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인 경우, 피·가해 소속이 다른 사안은 교육 지원청 상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다 도교육청 차원

▶ 사안부서

- 언론보도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 및 교육지원청·학교 현장 지원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지침 및 매뉴얼 안내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활동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에 배포
-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담당자 역량강화 및 사안처리 절차 안내 교육

V

피·가해 대상별 사안 처리 절차 실무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표 V - 1> 교직원[피해]-교직원[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기관)

피해 \ 가해	교원	직원
교원	(가해교직원)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감사·인사 기구 (피해교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직원		

[유의 사항]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가해교직원의 처분을 위한 감사 등은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이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수행함
- 학교장 또는 이사장에게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이 있는 일부 교직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부터 처분까지 가능함 (ex. 사립학교 기간제 근로자 등)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단계별 사안처리 절차

1단계: 신고 및 접수

교내 성고충상담창구가 상담 신청 또는 인지를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안을 탐색·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

1) 상담신청, 인지 및 상담

- 상담 신청
 - 피해교직원은 전화, 통신,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교내 성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피해교직원은 외부 절차(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형사 고소,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 이용 등)를 활용할 수 있음

- 피해교직원 요청 시 학교 예산 내에서 외부전문가 상담 가능

• 파·가해자가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인 경우, 파·가해 교직원의 소속교가 다른 경우 교육지원청에 직접 상담·신고 가능하며, 교육지원청 상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운영

● 인지

- 교내 소문, SNS(Social Network Service), 설문조사(실태조사), 타 기관 통보 등으로 인지된 사건은 사건 관련자와 연락하여 상황 파악
-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사건 해결방안을 결정하도록 지원

● 상담 녹음 및 절차 안내

- 상담내용 녹음 동의 여부 확인
- 피해교직원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고충상담원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상담을 진행
- 교내 관련 규정에 따른 사건처리 절차 및 비밀유지 원칙 안내

● 원하는 사건 해결 방향 탐색

-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피해교직원이 피신고인 및 교내 성고충상담창구에 원하는 내용을 파악
- 교내 성고충상담창구를 통한 피해자 보호·재발방지조치에 관한 설명
- 가해교직원의 처분을 위한 감사 등은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이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수행하며, 학교장 또는 이사장에게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이 있는 일부 교직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부터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점 설명 (ex. 사립학교 기간제 근로자 등)
- 피해교직원이 폭넓게 사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성희롱 상담 전문기관 이용 등 외부기관 구체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
- 다양한 해결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교직원이 원하는 해결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

● 상담 시 유의사항

- 비밀유지가 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
- 적극적 경청과 공감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
-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맥락을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질문
- 성희롱·성폭력 해당여부 및 처분의 내용 등 결과를 장담하거나 예측하는 발언 삼가

2) 사안 신고서 접수

- 피해교직원은 사안처리를 위해 성고충상담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담 기록은 신고절차를 대체할 수 없음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 사안 신고서를 성고총상담창구에 서면으로 또는 사이버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피해교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성고총상담원 참관하에 구술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시 사건 발생 시간, 장소, 행위 내용, 횡수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
- 사안신고서 접수 후 비밀유지 협조 안내할 것

참고

[신고 접수 시 유의 사항]

1. 피해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도록 유의함

- 피해자가 작성한 신고서(진술서)가 담당자가 목격자 등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신고서를 직접 수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정 지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함
- 담당자가 신고서를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하거나 2차 피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고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신고 내용 그대로 접수함
- 신고서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2. 당사자에게 상호 간 진술 내용을 불필요하게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함

- 피해자나 가해자의 상호 진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상호 간 진술을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함
- 피해자 및 가해자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진술 및 상호 간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를 확인함. 담당자나 관리자가 비공식적으로 당사자를 불러서 사실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진술을 사전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조사절차를 방해할 수도 있음

● 화해 및 중재

- 피해교직원이 가해교직원과의 화해 및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가해교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대한 의견과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성고총상담창구를 통한 당사자 간 화해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음
- 외부 관련 전문가가 화해 및 중재과정을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음
 - * 중재 과정에서 가해교직원과 피해교직원을 대면시키지 않음
 - *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 피해교직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재
 - * 성급한 중재를 시도하거나 가해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화해를 저해할 수 있음
- 화해 및 중재가 되어 피해교직원이 성고총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성고총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음

- ※ 화해: 당사자가 사적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민법 제731조 참조).
- ※ 중재: 당사자가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제3자(중재인)에게 그 해결을 맡기고 그 중재인의 판단에 따를 것을 약속하고 그에 따라 행해지는 절차(중재법 제3조 제1호 참조).

3)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생활교육과)에 사안발생 보고([부록5] 참조). 단, 중대·긴급사안인 경우 우선 유선 보고할 것
-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간음

4) 여성가족부 통보(성희롱·성폭력)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피해교직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성폭력방지과)에게 통보해야 함
- 피해교직원이 여성가족부에 사안 발생 보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신고서에 표시해두어야 함

5) 초기 대응

● 피해자 보호조치

- 근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제2항 및 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5조의2제2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4조, 제13조(여성가족부)
- 성고충상담창구는 신고 접수 시 피해교직원 보호 및 공정한 조사 진행을 위해 적절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학교장은 사안의 경중, 피해교직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공간 및 동선 분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등을 권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 **분리의 예시** | 수업 배제, 업무배제 또는 변경, (임시)담임교체, 재택근무, 근무 장소 변경, 동선 분리 등 권장, 연가 등의 승인 등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분리 등 보호조치 관련 사항은 교육지원청과 협의
- 불필요한 갈등이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의 내용, 기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야 함
- 피해자 보호조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것이어야 하되,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할 것
- 그밖에 피해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상담을 연계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피해교직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차 피해 방지

-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 목격자 등 및 관련인에게 사안과 관련하여 철저한 비밀 유지를 강조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 가능성 고지
- 사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교직원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행위 등을 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가중 조치 될 수 있음

2단계: 사실확인

신고 접수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1) 사실확인

담당자 확정

- 교직원 간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업무를 성고충상담원이 진행함
- 학교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2~4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때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음.
- 이때 교육지원청 피해조사위원을 활용할 수 있음
- 사실 확인에 참여한 사안처리지원단, 피해조사위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도록 함 ([부록 8] 참조).

📌 사실확인 개시 통보

-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사안 접수·사실확인 개시 사실 및 일정을 안내하고 출석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여러 차례 출석 요청에도 당사자가 사실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
- 피신고인이 신고인(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황을 확인하려고 연락하거나 주변인에게 소문을 유포하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

📌 사실확인 계획 수립

-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실확인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 비밀유지 및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당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
- 피해교직원이 원할 경우 동일한 성(性)의 담당자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정확한 사실 확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1명씩 다른 장소에서 따로 조사할 것
-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 내용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여 조사 시 활용할 수 있음

📌 사실확인 순서 및 요령

- 신고인(피해자) 조사 후 피신고인 순서로 진행하며, 참고인(목격자 등)을 대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신고인 면담에 앞서 하는 것을 권장
- 모든 사실확인 내용은 녹음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함
- 대면 사실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이메일로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음
- 대면 사실확인 시 면담자에게 ① 사실확인 참여 확인 및 내용 녹음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고, ② 반드시 위 녹음파일을 속기록 형태로 서면화해야 함
- 대면 사실확인 이후 추가 진술할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당사자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
- 사실확인 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음(다만 방해 시 제한 가능)

📌 사실확인 내용 관련

- 신고인(피해자) 등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신고 내용을 확정하여 정리한 다음에, 피신고인 대면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답 진행
- 발생 장소, 시간, 피해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육하원칙에 맞게 질문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장소, 지속 기간, 피해 횟수, 피해 정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데 유의
- 당사자의 관계, 업무 관련성, 구체적 성적 언동,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정이나 고충에 대한 전반적 사실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성고충상담원의 사실확인 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의 요청사항 파악에 충실해야 함
-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사실확인 시 상황이나 당사자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 의견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신고인(피해자)나 참고인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음. 그러나 피신고인 사실확인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신고 내용을 밝혀야 하므로 완벽한 익명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함
- 사안 진행과 관련된 의견(누구를 조사해달라, 무엇을 확인해달라 등)을 반영
- 피해자의 요구사항(분리조치, 인사조치 요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증거 확보

- 사안 발생이 교내에서 일어났을 경우 현장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아야 함
- 피해자 측이 신고 또는 고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후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증거물을 채취 하고 삭제하지 않도록 권유
- 사안 발생 현장 확인 및 관련 증거(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사진, 녹음파일 등)의 제출을 요청 하고 수집할 수 있음

사실확인 시 유의사항

- 피해사실을 떠올리도록 종용하거나 사건 관련 질문을 반복하지 않아야 함
- 평상시 품행이나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도록 유의함
- 피해자의 인격·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 피신고인에게도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확인 진행
- 피조사자가 왜곡된 성인식 등을 가지고 있어도, 성고충상담원이 나서서 훈계하는 등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성인식 개선은 별도 재발방지교육 실시)
- 다수인이 관련된 경우 사건 은폐 등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고인 면담은 당사자로부터 사실확인이 충분하지 않거나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
- 참고인 면담 시 참고인이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 하도록 함

2) 결과 보고

- 성고충상담원은 사실확인 종료 후 사실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사건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함. 이때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추가할 수 있음
- 조사 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참고

[2차 피해 방지]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 학교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조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함
- 학교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사안 관련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함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고충상담원의 책무

- 성고충상담원은 당사자 및 관련인에게 2차 피해 처리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함
- 성고충상담원은 피해 측의 평소 품행이나 태도 등을 근거로 비난하거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함
- 성고충상담원은 피해사실을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됨

〈성고충상담원, 담당자,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2차 피해 행위〉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출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 표준안」 제6조 제4항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성원의 책무

- 구성원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중용하거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나 평판 등을 소문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구성원,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행위>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중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출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제8조

☑ 3단계: 심의 및 조치결정

성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폭력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방지조치,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단계

1)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학교장의 지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위원 중 2명 이상 외부 성폭력 관련 전문가로 반드시 위촉해야 함
- 간사 1인을 두되, 성고충상담원을 간사로 할 수 있음

※ 가해자가 관리자인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 상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안 발생 후 별도 기안(내부 결재)을 통하여 성고충심의위원을 새로 구성해도 되나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 학교마다 내부 규정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위촉 기간 등을 정해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을 전부 교체하거나 별도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사안에 특정한 입장을 가진 위원을 선임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하여 임기를 정하여 위촉한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통해 특정 위원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총원하거나 외부위원의 수를 늘리는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부위원의 경우 학기 초에 위원을 정하여 구성하기보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위원을 선임하는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 구성을 변경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내부 결재를 하고 근거를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여성가족부, 2019. 12.)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사례집」(교육부, 2020. 12.)

2)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1) 준비단계

◆ 개최 기한

- 사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실확인 완료(10일 연장 가능)해야 하며, 조사가 완료되면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 개최사실 통지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을 서면으로 통보함(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피해·가해 교직원에게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심의대상 및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함. 참석하지 않으면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 사안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려야 함(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출석안내서 등 관련 서류는 비밀누설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 'B' 등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심의 결과 통보를 위한 당사자 주소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둘 것

-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 ※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가 피신고인일 경우 교육지원청 상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 교육지원청에서 사안을 담당할 경우 당사자들의 소속 학교에 주요 내용과 함께 상급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제척: 사안의 당사자 또는 사안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위원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사안에서 제척됨. 제척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심의 없이 곧바로 회의에서 배제됨

(제척 사유)

- ①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피: 위원에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가해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기피 결정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이때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기피 사유)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회피: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음. 회피를 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회에 회피 사유를 밝히고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에서 참여하지 않음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확인 :**

- **개별 학교마다 구체적인 방식을 정할 수 있음**

(예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만장일치로 의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의 준용 등

-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과 기피 결정을 받은 위원, 회피한 위원은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 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 수에는 산입할 수 없음.

(예시) 전체 위원이 7인인 심의위원회가 6명의 출석위원으로 개최되었다가 사건당사자의 기피 신청으로 1명의 위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위원회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출석위원 과반수 산정에는 포함되어 6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는 제외되어 나머지 출석위원 5명 중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
 * [소청심사위원회예규 제24호, 2022. 2. 14. 일부개정] 『소청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재적 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교육부, 대학성희롱·성폭력근절지원중앙센터(2021).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심의위원회 운영가이드, p.17. 참조

(2) 개최단계

-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함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대면 진행을 원칙으로 함
- 사건 당사자들의 출석 진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공정한 심의·의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출석 진술 예정인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의 대기 장소를 분리하여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및 당사자 등에게 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부록 8], [부록 14] 참조).

(3) 심의 단계

- 심의사항이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
 - *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가능
- 심의가 끝나고 서약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폐회와 동시에 전량 회수

<표 V - 2> 성고충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안)

* 세부 절차 및 내용은 부록 문서번호 14 시나리오 참고

단계	처리내용
개회 및 사안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를 알린다. *의사정족수를 확인한다. · 진행 절차를 설명한다. · 주의 사항을 전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다. * 성희롱·성폭력의 해당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함 * 가해교직원에 대한 징계나 인사 조치 권한이 없음을 안내함(단,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는 일부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내 인사위원회 등과 통합·연계하여 심의 가능하며, 피해자보호조치 차원에서 학교장의 복무권·업무분장 사항 내에서의 조치는 심의 가능) -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함을 알린다. - 욕설,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 됨을 알린다.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V. 피·가해 대상별 사안 처리 절차 실무



단계	처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회피 여부를 확인한다. *의결정족수를 확인한다. -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린다 (서약서 작성). •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한다 (사실확인 내용,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 측 주장과 현재 상태, 특이사항 등).
↓	
신고인(피해자)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인(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말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서 신고인(피해자)에게 질문하고 신고인(피해자)이 답변한다.
↓	
피신고인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의 입장을 말하도록 한다. • 위원회에서 피신고인에게 질문하고 피신고인이 답변한다.
↓	
(필요시) 참고인 진술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나 해당 학교 교직원 등을 심의위원회에 출석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를 심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피해를 포함하여 심의함 - 신고된 행위가 여러 개일 경우 행위별로 성립 여부를 확인함 •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심의한다. •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 학교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3) 피해교직원 조치

〈표 V - 3〉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치

구분	피해교직원
조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부서 전환 4.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자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병가 처리할 수 있음

4) 심의 결과 통보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는 학교장에게 보고

- 학교장은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 등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
- 조치의 근거와 이유 및 조치결과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 심의 결과를 구분하여 기재하여 통보
- 결과 통보 시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상급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에 공문으로 결정을 통보함

☑ 4단계: 조치이행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이행되는 단계

1) 심의 결과 이행 및 결과 보고

- 학교장은 심의결과 및 피해교직원의 상태 및 학교 실정,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피·가해 교직원과의 공간 분리, 부서 전환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함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치이행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2) 심의 결과 불복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재심이 불가함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소송은 불가능함

“~ 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의 결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원고(가해교직원)와 피해자를 분리시킨다는 의미의 사전적, 절차적 성격을 갖는 조치로 보일 뿐, 위 조치결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30734 판결

- 피해교직원은 위 조치결과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함. 당사자 간 합의로 학교 내 사안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 5단계: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조치,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의 이행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단계

1) 사안 관리

-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
- 학교장은 조치이행 관리 및 감독을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징계를 받은 교직원의 경우 교단 복귀 시 관련 교육 및 상담 전문기관을 통한 성 인지 교육 및 개별 상담 시행
- 학기 초인 3월 또는 4월에 신규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권장 (신규 교직원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2) 재발방지대책 수립·보고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사안 발생 보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및 여성가족부에 제출* ([부록 21] 참조)
 -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보고는 필수임
 - 단,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아래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재발방지교육),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참고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설문 시 고려사항】

- **학교 문화 개선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 학교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학교 문화 개선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는 사건처리절차 종료 이후에 학교 문화 개선 등을 위하여 이후 개선 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익명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 설문 실시
 - 학교 내 조직문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추후 변화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함
 - 전수조사 실시 방법은 학교장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컨설팅 전문 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사실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 ① 피·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② 추가 피·가해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전수조사 실시
 -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전수조사로 인해 오히려 소문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항 구성에 유의할 것
 - 자유롭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익명 응답을 허용하되, 기명으로 응답하여야만 실제 조사로 이어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설문 도입부에 명시
 - 추가로 면담을 원하는 학교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온라인 신고센터 누리집 등을 안내하여 다양한 응답 기회 제공
 - 전수조사 실시 방법은 학교장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교육지원청·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진행

3) 심의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조치 이행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함
-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를 실시함

〈표 Ⅴ - 4〉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예시

구분	목적 및 기대효과
행위자 교육	행위자 및 2차 가해자, 성희롱 발생 부서 관리자 등 성희롱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실시
성희롱 근절 추진 기구 구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과 실행력 제고, 다양한 구성원·여성 직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의 참여를 통해 대책의 실질적 추진 강제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V. 피·가해 대상별 사안 처리 절차 실무



구분	목적 및 기대효과
특별신고기간 운영	특별 신고기간 운영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공유와 신뢰를 기반으로, 누적되어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파악 및 조사를 통해 피해회복 및 조직기강 확립
익명신고제도 활용	익명 신고를 통해 조직의 다양한 문제점을 폭넓게 수집하여 조직의 성희롱 실태와 조직문화 개선지점 파악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요청 가능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양적, 질적 조사 병행)	전수 설문조사 및 FGI의 조사방법을 사용한 조직 구성원의 성 인지 감수성 진단과 성희롱 실태 진단을 통해 조직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 및 개선방안 도출
조직구조와 인사관리 제도 전반 점검	조직구조 및 인사관리제도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구조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개선·신뢰 구축	고충처리 과정의 비밀보호,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갖춘 업무담당자, 조사위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법 마련 등 고충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사안처리 과정의 비밀 보호,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으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의 잠재적 문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주체별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라인 마련
상담 채널의 다양화, 전문화	고충상담원, 사이버신고센터,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채널을 확보하여 상담의 접근 용이성·전문성·신뢰성·객관성 제고
성희롱 금지 방침 명문화 공표	성희롱 금지 관련 명확한 방침 수립 및 기관장이 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성희롱·성폭력 금지 방침에 대한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제고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율 목표 설정 및 보완계획 수립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율 목표는 100%로 연간 교육계획에 신규 입사자 및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까지 포함하여 수립
계층별 성희롱예방교육	관리자, 임원급, 하위직 등으로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고 교육사각지대를 점검하여 교육효과 제고(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조직 내 실제 사례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효과 극대화)
고충상담원 확충 및 전문교육 실시	전문교육을 받은 고충상담원의 확충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조직문화 개선 활동 실시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4).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p.76~77

참고

[성희롱·성폭력 피해교직원을 위한 '고충심사제도' 안내]

• 고충심사제도의 의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른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음

※ 고충 심사를 위한 고충심사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기구임

• 고충심사제도의 개념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주기 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법률적인 쟁송의 절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실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청구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처리)

- ①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고충상담 신청,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공무원고충처리규정)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 ①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으로 정한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대상) ①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하 “**성희롱**”이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의2(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처리는 고충상담, 고충심사 및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처리로 구분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 등**”이라 한다)와 인사혁신처장은 고충상담이나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1. 고충상담: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
- 2. **성폭력범죄·성희롱 신고: 피해자의 동의**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표 V - 5> 학생[피해]-교직원[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기관)

피해	가해	교직원
학생		(가해교직원)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감사·인사 기구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유의 사항]

- 학생이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3) 「학교폭력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4)의 기본 절차 및 구체적인 안내를 따라야 함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재발 방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단계별 사안처리 절차

☑ 1단계: 신고 및 접수

상담 신청 또는 인지를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교내 구제절차에 관해 안내하는 단계

1) 인지 및 상담

- 피해학생의 상담이나 제3자 신고, 학교에서 인지한 경우 사안 처리 가능
- 성고충상담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되,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도록 주의함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상담 사실과 내용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함

2) 신고 접수

- 학생이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므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사실확인 및 분리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점을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
-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으므로 성고충상담원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내부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소통하여야 함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 및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고 하는데괜찮을까요?

사전에 피해학생이 '가해자를 만나고 싶다' 등 명시적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조사 기간 가해자와 피해학생 간의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사과하려는 목적으로 접촉하였더라도,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접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두렵거나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사과 및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말고, 학교 측을 통해서 연락하도록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성고충상담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보고(학교폭력)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생활교육과)에 사안발생 보고, 중대·긴급사안인 경우 우선 유선 보고할 것

4)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수사기관 신고

- 성범죄 사안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공문 발송중에 한가지 방법으로 신고함
 - * 아동학대범죄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필요시 여성긴급전화(☎ 1366), 거주 지역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전문병원과 연계

-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장 및 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음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를 먼저 했더라도,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 다만,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가능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5) 여성가족부 통보(성희롱·성폭력)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피해학생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지체없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함

6) 분리 조치 및 초기 대응

▶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⁴⁾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및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⁵⁾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가리킴

- 가해 교직원의 분리

* **분리의 예시** | 수업 배제, 업무배제 또는 변경, (임시)담임교체, 재택근무, 근무 장소 변경, 동선 분리 등 권장, 연가 등의 승인 등

📌 [피해학생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필요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신속히 병원 이송, 보건실 방문 시 치료기록 보관
- 교내 상담실, 위(Wee)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지원
- 사안 발생 현장에 CCTV가 있을 경우 CCTV 영상을 확보
- 사안 발생 현장이 교내일 경우, 증거 물품 보관, 현장 보존하여 수사기관 의뢰

📌 [2차 피해 방지]

- 가해자를 포함하여 목격자 등 관련된 학교 구성원에게 사안 관련 철저한 비밀 유지를 강조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 가능성 고지
- 가해자가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행위 등을 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가중 조치될 수 있음

☑ 2단계: 사실확인

신고 접수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재발 방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1) 사실확인 및 결과보고

- 피해학생에 대한 사실확인 등은 원칙적으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시행
-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으므로 성고충상담원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내부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소통하여야 함

※ 가해교직원에 대한 사실확인 등 관련 내용은 [V.1. 2단계] 참조

-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직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됨
-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개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피해학생이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최하지 않음

☑ 3단계: 심의 및 조치 결정

성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폭력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조치,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단계

1)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개최 및 심의

※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개최 및 심의 관련 내용은 [V.1. 3단계] 참조

2)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내용

구분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조치사항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비고	*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교육환경 변경) - 단, 성폭력범죄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 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함(「성폭력방지법」 제7조)

☑ 4단계: 조치이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이 이행되는 단계

1) 조치이행 및 결과 보고(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 학교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함

2) 조치결과 불복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불가능함

“~ 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원고(가해교직원)와 피해자를 분리시킨다는 의미의 사전적, 절차적 성격을 갖는 조치로 보일 뿐, 위 조치결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30734 판결

- 「학교폭력예방법」 상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 5단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제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조치,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의 이행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단계



1) 사안 관리

-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
- 학교장은 조치이행 관리 및 감독을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이후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교직원의 경우 교단 복귀 시 관련 교육 및 상담 전문기관을 통한 성 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의무적 시행
- 학기 초인 3월 또는 4월에 신규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권장 (신규 교직원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2) 재발방지대책 수립·보고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사안 발생 보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및 여성가족부에 제출* ([부록21] 참조)
-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보고의 생략은 불가능
-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아래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재발방지교육),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참고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설문 시 고려사항]

- 학교 문화 개선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 학교 전체 구성원을 상대로 학교 문화 개선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는 사건처리절차 종료 이후에 학교 문화 개선 등을 위하여 이후 개선 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익명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 설문 실시
- 학교 내 조직문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추후 변화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함
- 전수조사 실시 방법은 학교장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컨설팅 전문 기관 등과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음
- **사실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 ① 피·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② 추가 피·가해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전수조사 실시
 -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전수조사로 인해 오히려 소문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항 구성에 유의할 것
 - 자유롭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익명 응답을 허용하되, 기명으로 응답하여야만 실제 조사로 이어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설문 도입부에 명시
 - 추가로 면담을 원하는 학교 구성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온라인 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안내하여 다양한 응답 기회 제공
 - 전수조사 실시 방법은 학교장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교육지원청·수사기관·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진행

3) 심의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조치 이행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함
-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를 실시함

〈표 V - 6〉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예시

구분	목적 및 기대효과
행위자 교육	행위자 및 2차 가해자, 성희롱 발생 부서 관리자 등 성희롱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실시
성희롱 근절 추진 기구 구성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과 실행력 제고, 다양한 구성원·여성 직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의 참여를 통해 대책의 실질적 추진 강제
특별신고기간 운영	특별 신고기간 운영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공유와 신뢰를 기반으로, 누적되어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파악 및 조사를 통해 피해회복 및 조직기강 확립
익명신고제도 활용	익명 신고를 통해 조직의 다양한 문제점을 폭넓게 수집하여 조직의 성희롱 실태와 조직문화 개선지점 파악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서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요청 가능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V. 피해 대상별 사안 처리 절차 실무



구분	목적 및 기대효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양적, 질적 조사 병행)	전수 설문조사 및 FGI의 조사방법을 사용한 조직 구성원의 성 인지 감수성 진단과 성희롱 실태 진단을 통해 조직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 및 개선방안 도출
조직구조와 인사관리 제도 전반 점검	조직구조 및 인사관리제도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구조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개선·신뢰 구축	고충처리 과정의 비밀보호,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갖춘 업무담당자, 조사위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법 마련 등 고충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사안처리 과정의 비밀 보호,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으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의 잠재적 문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주체별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라인 마련
상담 채널의 다양화, 전문화	고충상담원, 사이버신고센터, 외부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채널을 확보하여 상담의 접근 용이성·전문성·신뢰성·객관성 제고
성희롱 금지 방침 명문화 공표	성희롱 금지 관련 명확한 방침 수립 및 기관장이 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성희롱·성폭력 금지 방침에 대한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제고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율 목표 설정 및 보완계획 수립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율 목표는 100%로 연간 교육계획에 신규 입사자 및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까지 포함하여 수립
계층별 성희롱예방교육	관리자, 임원급, 하위직 등으로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고 교육사각지대를 점검하여 교육효과 제고(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조직 내 실제 사례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효과 극대화)
고충상담원 확충 및 전문교육 실시	전문교육을 받은 고충상담원의 확충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조직문화 개선 활동 실시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4).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pp.76-77

3 |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표 V - 7〉 교직원[피해]-학생[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

피해 \ 가해	학생
교직원	(피해교원, 가해학생)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직원, 가해학생)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유의 사항]

- 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피해교원과 가해(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사안처리 절차는 「교원지위법」 및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에 따라 처리함
- 다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와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를 위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가 가능함

🔨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

[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생략)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생략)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생략)
 - (생략)

-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

교원[피해] - 학생[가해] 단계별 사안처리 절차

☑ 1단계: 신고 및 접수

교내 성고충상담창구가 상담 신청 또는 인지를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

1) 인지 및 상담

-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하므로 인지·상담 단계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립 여부를 예단하지 않아야 함
- 인지 및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기관의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 피해교원이 사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성고충상담원 또는 교권업무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함
- 피해교원에게 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피해 보호가 가능함을 설명하되,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동시에 가능한 교권보호위원회로의 사안처리가 원칙임을 설명함
-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원하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외부 행정기관을 통한 사안 조치방안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어야 함
- 성고충상담원은 피해교원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상담일지에 기록함

※ 아래의 설명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처리 절차를 기준으로 제시되었음

2) 사안 신고서 접수

- 피해교원은 사안처리를 원하는 경우 신고서(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성희롱·성폭력 사안 신고서)를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자 또는 성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함
- 성고충상담원(업무담당자)는 피해교원에게 화해·합의 등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보호자 통보

- 관련학생(침해학생) 보호자에게 발생사실 및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함

4) 교육지원청 보고(교육활동 침해행위)

-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유선 보고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 서면으로 보고
-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발생 보고 필수
-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 보고하고 신속한 처리에 노력함
- * 필요시 수사기관 신고 가능(교직원이 피해자인 경우 의무는 아님)

5) 여성가족부 통보(성희롱·성폭력)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피해교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발생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6) 초기 대응

▶ 분리 조치

- 피해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교원, 가해(침해)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함. 공간이나 동선 분리 등의 물리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함
-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를 대면시키지 않도록 함

▶ 피해교원 안전조치

- 피해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
- 응급처치나 심리 상담 연계 등의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 2단계: 사실확인

신고 접수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1) 사실확인

-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사실확인은 교권보호위원회 사안처리 절차를 준용
- 다만, 사실확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고충상담원이 피해교원뿐만 아니라 가해(침해)학생에 대한 사실확인 시 동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사실확인 등 관련 내용은 [V.1.2단계] 참조

2) 사실확인 결과보고

※ 결과 보고 관련 내용은 [V.1.2단계 2) 결과 보고] 참조

☑ 3단계: 심의 및 조치 결정

성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폭력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조치,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단계

1)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심의

- 「교원지위법」,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에 따라 진행함

[참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24년 3월 28일 시행

2)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

※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개최 및 심의 관련 내용은 [V.1. 3단계] 참조

참고

[성고충심의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처리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와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를 위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가 가능함

구분	피해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조치사항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부서 전환 5.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4단계: 조치이행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이행되는 단계

1) 조치이행 및 결과 보고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절차 준용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치이행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 1. 교직원(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2. 학생(피해) - 교직원(가해) 사안
- 3. 교직원(피해) - 학생(가해) 사안
- 4.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2) 조치결과 불복

-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피해교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가해(침해)학생:

- 전학 및 퇴학: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사립학교 포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 그 외 조치: 행정심판, 행정소송(다만,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소송은 불가능함

“~ 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결정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의 결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원고(가해교직원)와 피해자를 분리시킨다는 의미의 사전적, 절차적 성격을 갖는 조치로 보일 뿐, 위 조치결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전보조치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30734 판결

- 피해교직원은 위 조치결과와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함 당사자 간 합의로 학교 내 사안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5단계: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조치,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의 이행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단계

1) 사안 관리

- 피해교직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행위 교직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함
- 학교장은 피해·행위 교직원에 대한 조치이행 관리 및 감독을 해야 함
-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함

2) 재발방지대책 수립·보고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보고의 생략은 불가능
 -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의 교육지원청·도교육청 필수 보고
-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아래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재발방지교육),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심의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조치 이행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발방지조치를 이행함
-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를 실시함

4 | 학생(피해) - 학생(가해) 사안



<표 V - 8> 학생[피해]-학생[가해] 사안 주관 위원회

피해	가해	학생
학생		(피·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유의 사항]

- 학생이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과 동법 시행령,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4)의 기본 절차 및 구체적인 안내를 따라야 함
- 동시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없는 성폭력방지법상의 **발생 보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은 본 가이드에 따름

1) 인지 및 상담

- 피해학생의 상담이나 제3자 신고, 학교에서 인지한 경우 사안 처리 가능

2) 신고 접수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신고 접수 대장 기록, 접수 보고
- 학교 내 신고 및 학교 외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
- 학생이 파·가해인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실 확인 및 분리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점을 파·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

2) 여성가족부 통보(성희롱·성폭력)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성폭력방지과)에게 통보해야 함([부록 5] 참조)

3)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재발방지대책 보고는 필수
 -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의 교육지원청·도교육청 필수 보고
-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아래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재발 방지교육),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2차 피해 발생 시 추가 조치를 실시함

Q&A 사안 처리 실무

Q 사실확인 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실확인 기간은 각 단위학교의 사건처리 지침에 따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1조 제2항에는 ‘조사신청서[부록 02-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시작하여 20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확인 기간을 10일 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최대 사실확인 기간은 조사 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최대 30일 동안입니다.

Q 성고충상담원은 교육청과 여성가족부에 사건 발생 보고·통보를 언제 해야 하나요?

A 사건 신고서를 접수한 후 교육청과 여성가족부에 사건 발생을 보고·통보를 합니다. 학교에서 사안을 인지하거나 초기 상담만 한 상태에서는 신고인(피해자)의 사건 신고 및 통보에 대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신고서[부록 02-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여성가족부에 사건 통보 여부에 대한 의사를 함께 확인한 후 보고 및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Q 학교 내에서 화해 또는 중재가 된 사안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나요?

A 사건 신고서가 접수된 사안이라면 화해 또는 중재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상담·신고 후 사안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 등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사안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징계 등 가해자에 대한 처분만을 원하지 않는지, 사실확인고 심의를 진행하지 않기를 원하는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실확인고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분리나 휴가 지원 등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외부절차(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이후 학교 내 사건 처리를 원하는 경우 다시 사건을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보호 조치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고, 얼마나 할 수 있나요?

A 보호 조치는 사안 접수 후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로 할 수 있고, 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의 방법은 당사자 업무 공간 분리, 부서 이동 등이 있습니다. {[V.1.1단계 5] 초기대응} 참조

예를 들어 성희롱 사안 신고 접수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당사자 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면 학교장은 사실 확인 기간 및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하는 업무를 조정하거나 업무 공간을 재배치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는 가해자에게도 징계에 준하는 수준의 불이익한 조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분리 방법과 기간 등 보호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심의위원회 구성 후 위원을 변경할 수 있나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되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하나요?

A 심의위원회 구성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원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을 해촉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을 해촉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위원회 개최시 일시적인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의결정족수 달성에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학교의 특성상 심의위원회 구성의 성비를 맞추기 어려울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교직원 내부 구성만으로 성비를 맞추기 어렵다면, 심의위원회에는 2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부위원 위촉을 통해 성비 맞추기를 권장합니다.

Q 사건 당사자가 회의록 등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사자(신고인, 피신고인)은 자신의 진술[부록 10-사실확인 문답서] 기록에 대해서는 열람할 권한이 있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회의록 등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청의 사안처리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외부절차 진행을 원하면 학교 내 상담이나 사안 처리 절차를 종결해야 하나요?

A 학교 내 사안 처리와 외부절차 진행은 별개로, 신고인이 선택한 절차만을 진행할 수도 있고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여도 학교 내 사안 처리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될 수는 없습니다.

VI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이해
2.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대화 및 지원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의 이해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원 기관 안내



1 |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이해⁶⁾



- 성희롱·성폭력 사안 및 범죄 발생 추이에 따르면, 성폭력을 경험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성폭력 발생 시 가장 우선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신체적, 정서적 개입과 대처, 지원이 중요함. 이때 적절한 대처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신속한 안내 및 효과적인 개입이 중요함
- 발생 시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포와 불안, 우울, 분노, 죄의식, 불편감, 불쾌감, 성적혐오감 등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며 심리 정서적 후유증,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거나 장기적인 어려움에 놓이기도 함
-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범죄 피해 증가함
-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유증

신체적 피해	심리·정서적 피해	대인관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손상, 생식기 손상 및 출혈, 임신, 성병 감염 등 신체적 어려움 - 성적 억압 - (자신을 돌보지 않는) 과도한 성행위 또는 위험한 성행동 노출 - 성적 억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 자기혐오, 불안, 공포, 무력감 등 정서장애 - 자기 비난, 죄책감 - 자살 사고 및 시도 - 분노 및 적개심 - 장기적 후유증 (성적 기능상의 문제, 신체적 문제, 사회적 어려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 소외감 - 낙인 - 타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어려움 - 이성 관계와 부모 관계에 대한 어려움 - 애착 형성의 어려움(불안정) - 사회에 대한 불신

- 2차 피해 및 재피해 : 피해자에 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난, 소문의 생성 및 전파하는 것을 포함

6) 출처: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⁷⁾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 (피해를 악화시키는 요인)

- 피해 정도가 심각할수록
- 오랜 기간에 걸친 피해일수록
- 신체 폭력이 병행되어 발생한 경우
- 가족 내에서 피해인 경우
- 피해 경험을 노출하지 않거나 도움을 못 받은 경우
- 가족관계가 부정적인 경우

회복을 돕는 요인 (피해를 완화하는 요인)

- 자아존중감이나 회복탄력성, 내적 통제감이 높을 경우
- 외부 비난 귀인 요소가 적은 경우
- 가족관계(가족응집력)가 우호적인 경우
- 사회적,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이 형성되고 긍정적인 경우
- 주변에 도움(지지)체계가 용이한 경우

7) 출처: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개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2 |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대화 및 지원



- 피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거나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통합지원, 학습 및 진로 지원 등 다양한 지원과 적용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되었으나, 구성 및 적용은 학생의 상황이나 욕구, 각 지역 및 기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원될 수 있음
- 피해학생 대화 시 대상자의 현재 상태,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 특수성, 지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2-1. 피해학생과 대화하기

-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안전 확인 및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대화 진행함
- 교사는 학교(교실)에서 대상 학생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찰하고 보호, 도움 등을 제공하거나 필요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의료적, 법적 지원을 제공 및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 대화가 중요함
- 피해로 인한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 피해학생의 용기에 충분한 지지를 보내야 함
- 사안 발생 시 학교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피고, 평상시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등의 행위는 주의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거나 탓을 하는 등 사건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고, 가해자를 대변하거나 두둔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안의 개입과 해결을 위해 피해학생의 특성(학교급, 피해 유형, 현재 상태)과 학생, 보호자의 욕구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 피해 후 고통 정도 및 지속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 관찰과 관심으로 충분한 회복지원을 도와야 함
- 피해학생이 신체적 질병이나 고통을 호소할 때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의료기관이나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들을 안내하도록 함
- 치료와 평가, 사건 수사를 위한 결석, 조퇴 등 출결에 대한 안내 제공과 학업 격차나 손실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사안에 대한 비밀유지 및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하여 독립된 진술 공간을 보장이나 피해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면담 시 피해 사실을 떠올리도록 중용하거나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고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해가며 증거물 확보 등을 진행하여야 함
- 피해학생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에 민감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함
- 피해 정도와 사안에 대한 민감한 내용, 전문적 상담은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움이 되는 표현

- 정말 힘들었겠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다.
- 언제나 네 편이다.
- 너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
- 네 탓이 아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

- 왜 그런 곳에 따라갔니? 설마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했니?
- 너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
-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마.

참고

대화 진행 시 유의 사항

- 먼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보아야 함
-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된 말투와 표정 등의 자세를 가져야 함
- 비난하거나 탓을 하는 언행을 하지 않으며,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믿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함
- 피해자는 심리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정서적 안정을 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함
- 피해 사실에 대해 추궁하듯 반복해서 묻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도록 함
- 신속하게 수사기관, 전문기관을 통한 신고, 의료, 상담 지원, 법률지원을 받도록 요청하여야 함

Tip. 피해학생과의 대화는 신뢰감 형성이 매우 중요함

-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워하고 불쾌감 또는 불편감과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인간관계나 자아개념 등에 상처를 입는 등 피해가 지속되거나 가중될 수 있음
- 개인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비밀보장에 대해 민감할 수 있으므로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뢰감 형성이 중요함



2-2. 피해학생 보호자와 대화하기

-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기본적인 심리를 이해한 후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함
- ▶ 보호자는 분노, 원망, 억울, 미안함, 죄책감, 놀람, 당황 등의 복합적인 감정과 심리·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음. 이때 교사나 업무담당자는 보호자의 이런 감정과 반응에 대해 우선으로 공감, 지지를 표현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 됨

참고

보호자 대화 시 유의 사항

- 자녀의 사안으로 내교 및 면담을 요청하는 보호자의 힘듦을 이해하고 상처와 고통에 대한 지지·공감을 하도록 함
- 보호자와 자녀의 평소 관계를 바탕으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사안과 관련된 정보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는 학생(자녀)이므로 수사나 사안처리 과정, 어른들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자녀의 치유나 회복이 간과되지 않도록 함께 안내하는 것이 중요함
- 자녀의 회복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이 중요함을 알리고 학교나 주변 자원과 협력, 전문기관 연계 등에 대한 안내와 조력
- 보호자의 특성 및 상태를 파악하여 현재 자원과 특성 등에 따라 개입 목표나 순서 등의 전략을 고려하여 접근함

3 |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의 이해



1) 피해 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 제도 안내

사안 인지 및 상담 과정 유의 사항

●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보호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인지할 경우 비밀유지 엄수 - 업무담당자는 피해자 정보 및 성폭력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비밀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및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됨 - 법령 위반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상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 상담소·보호시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음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78조(징계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 개인정보 보호법

참고

상담소·보호시설의 상담자료 보관 기간

- 상담일지는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 조치하되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전 연령 대상 강간살인죄 등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자료 폐기 가능
- 상담소·보호시설이 폐쇄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폐쇄되는 상담서류 일체를 당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송토록 조치하고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 조치



신고 접수 과정 피해자 지원

●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예방 - 집단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 - 가해자가 협박하거나 소문을 내는 경우 2차 가해로 추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제18조(2차 피해 방지)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정의), 제4조(기관장의 책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12조(제2차 피해의 방지)

● 피해자 보호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신청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관련하여 2차 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 보호 조치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 -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능
신청	경찰, 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의 협박·위협이 염려되거나 피해가 있었던 경우 수사기관·법원에 신변안전 조치 신청 가능 -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 -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 지원 -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변보호조치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신변안전조치) -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범위),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신변보호의 대상), 제29조(조치 유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피해자보호명령 등)

● 인터넷 피해 구제제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대상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 댓글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자
주요 내용	- (명예훼손 분쟁조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청구 - (권리침해정보 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모욕 또는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인격권)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 ※ 성(性) 관련 불법 촬영 정보 및 성(性)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는 디지털성범죄심의회지원단에서 전담 처리 - 권리침해 상시 상담 접수
신청	- 국번 없이 1377, 홈페이지(http://remedy.kocsc.or.kr) 상담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5

성폭력 피해자 대상 수사 과정에서의 지원 제도

● 국선번호인 무료 지원 제도

주요 내용	-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 함께 출석, 공판절차 참여하여 의견진술 등 지정받은 사건의 수사과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전문적인 법률지원
신청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조사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및 보호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번호인 지원 신청 -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피해자가 변호사 지정하여 선임 불가
관련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서울시) http://crisis-center.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번호+132)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9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피해 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대상	- 13세 미만·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이 법률상 의무 참석 - (19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등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해도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효과 등을 적극 검토하여 수사기관과 신중한 협의에 따름
-----------	--



주요 내용	- 수사기관·법정 증언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안과 긴장으로부터 원활한 의사 소통·진술을 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인이 함께 동석하는 제도	
	- 단, 사안의 가해자로 가족, 친족이 추정 또는 확인되는 경우 경찰·검찰·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신뢰관계인으로 참석 불가	
	신뢰관계인	- 피해자의 가족 또는 변호사 -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라포가 형성된 관계자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1조(신뢰관계자의 동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및 제221조	

● 가명조서 신청 제도

대상	-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규정된 범죄의 신고자 또는 피해자
주요 내용	- 진술·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조서·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제도
신청	- 형사절차 과정(경찰·검찰 조사) 에서 가명조서 작성 안내·신청
관련 법령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0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3조(인적사항 기재 생략) -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 피해자 진술 녹화 제도

대상	- 19세 미만 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인인 반드시 촬영·보존
주요 내용	-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부터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모든 진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보존 -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녹화내용에 불포함 - 영상녹화 시에 피해자 등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받고 진행 ※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 녹화 거부 의사는 불수용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3조(영상녹화의 방법), 제24조(영상녹화 시 유의사항) 제25조(속기사의 참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진술조력인의 참여 지원 제도

대상	-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인	
주요 내용	- 아동·장애인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이나 피해자·그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중개·보조하여 진술 조력 - 피해자 조사 전에 피해자·법정 대리인·변호사에게 진술 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 면담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해 진술조력인의 증인 신문 참여 가능	
	진술조력인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8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피해진술 속기사 참여 지원(속기사 참여)

주요 내용	-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영상 녹화 시에 진술 녹화실 외부에 마련된 특정 장소에서 진술 발언에 대한 속기록 작성 - 영상녹화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 영상물에 대한 사후 속기록 작성 - 경찰은 진술 후, 속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법으로 진술자로 하여금 속기록을 확인하게 하고, 진술자가 이의가 없을 때에 속기록 말미에 기명날인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5조(속기사의 참여) 제26조(속기록의 작성)

의료지원 제도

진료비용 지원

주요 내용	- 피해 발생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병원 진료·간병비 지원 - 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내역통보 제외 대상인 특수상병군 적용 강화 - 의료지원 기간 2년 초과 시, 의료지원 기관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자체(시·도, 시, 군, 구) 협의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진료비	- 내·외과적 손상을 입어 성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단순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지원 제외 - 예방적 치료(피부과, 비뇨기과 등)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 원칙
	입원비	- 입원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병상 사용을 원칙



	약제비	- 긴급하게 구입한 약품비 지원 ※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값은 미지원
	진단서 발급비	- 일반진단서 비용만 지원, 개인보험과 관련 지원 불가 - 진단서의 제출처는 학교·직장·수사기관·법원으로 제한
신청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이용 시 지원 신청·문의 - 개인이 우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급 지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영수증 외 진단서·진료확인서 등이 필요하므로,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에 자세한 문의·상담 필요	

● 성폭력으로 인한 인공 임신 중절·출산 지원

주요 내용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평가,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원(비급여 심리치료 제외) - 낙태로 인한 부검 및 화장 비용 지원 가능 - 아동·청소년 대상 인공 임신 중절·출산은 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름 - 인공 임신중절·출산은 피해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염두에 두어 진료 의사 소견과 피해자 본인의 협의에 따르며 절차 단계별 동의를 요함	
	임신 중절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 임신중절은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경우만 가능, 그 밖의 경우 지원 불가 (모자보건법 제14조) - 정신 장애인으로 성폭력 피해사실 소명에 구체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호에 의한 인공 임신중절 및 의료비 지원 가능 ※ 본인·배우자가 우생·유전학적(대통령령 지정) 정신장애,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에 자세한 사항 문의·신청	

● 돌봄비용 지원

주요 내용	- 피해 아동·장애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보호자의 돌봄 공백 지원 - 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비용 분에 대해 지원 ※ 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 양육지원, 활동보조인 등	
대상	-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 - 13세 미만 피해 아동의 13세 미만 형제·자매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로 가족 돌봄 받기 어려운 경우	
신청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에 자세한 사항 문의·신청	

● 간병비 지원

주요 내용	- 성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 지원 - 1인당 최대 1개월, 최대 300만 원 이내 지원 가능	
대상	-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면서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신청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성폭력 내담자에게 간병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안내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원 기관 안내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안내

▶ 해바라기센터 (아동형, 위기지원형, 통합형 등 3개 유형 운영 체계)

대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기능	- 피해자 및 보호자 상담, 의료, 법률·수사, 심리치료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수사·법률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무료 법률지원사업, 국선변호사 연계 등 지원
	의료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조치,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 전문의 진료, 진단서 발급 등
	심리치료	- 정신과 치료·심리상담 직접 지원 또는 외부 기관 연계
	상담	- 피해자 및 가족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기관 연계
운영	- 아동형(9시~18시, 월~금요일), 위기지원형, 통합형(365일 24시간),	
문의	- 전국 해바라기센터 기능별 연락처 참조	

분류	지원 대상	이용 시간	공통사항	기능별 지원내용
① 아동형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연령 구분 X)	월~금 9:00~18:00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대상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상담·의료·심리·법률 서비스 등 사례관리
② 위기지원형	연령 구분 없이 피해자 이용 지원	365일 24시간 * 통합형 내 아동형 9시~18시 운영		수사·의료·법률·상담 서비스
③ 통합형 (①+②)				통합지원 (①+②)

▶ 여성긴급전화 1366

대상	- 성희롱·성폭력·디지털 성폭력·교제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기능	- 사건 발생 후 위기 개입을 위한 긴급한 구조·수사기관·상담·의료·보호시설·법률구조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연계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교제폭력·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임시 보호(최대 7일), 숙식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
운영	- 24시간 365일 무휴
문의	- 전국 지역번호 + 여성긴급전화 1366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이해
2.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대화 및 지원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의 이해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원 기관 안내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대상	- 젠더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기능	-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24시간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불법 촬영물 삭제·유포 현황 모니터링 지원 -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 아동·청소년 대상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운영	- 24시간, 365일
문의	- 디지털 성범죄 1544-9112 / 카카오톡 031cut - 스토킹·교제폭력 1551-9050 - 아동·청소년성착취 1551-9116 - 경기도 젠더폭력 핫라인 010-2989-7722 - 여성긴급전화 경기센터 031-1366

▶ 지역 성폭력상담소

대상	- 성폭력,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피해 등 피해자
기능	- 피해자의 의료기관 이용 연계·의료비용 지원, 법률지원, 사법 처리 절차 관련 지원, 수사기관 조사·법원 증인 신문 등에 동행
운영	- 9시~18시, 월~금요일
문의	- 전국 지역 성폭력상담소 연락처 참조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상	- 성폭력 피해자
기능	-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무료법률지원(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운영	- 10시~17시, 월~금요일
문의	- 02-883-9284 / http://www.crisis-center.or.kr/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운영, 24시간 상담 지원)

대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기능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불법 촬영물 삭제·유포 현황 모니터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연계 등 지원, 센터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삭제 및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삭제지원 신청	- 피해자 및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 가능 ※ 삭제지원 요청 시 피해자는 신청서류, 신분증 사본 등 제출
	지원연계	- 피해 내용과 연계 의뢰서 작성 제출 (다음 중 1가지 이상 구비) ※ 다운로드 받거나 유포된 피해 촬영물, 게시물 링크 주소(URL), 유포물 화면 캡처본, 유포 게시물 제목 및 검색키워드 등
운영	- 24시간, 365일	
문의	- 전화상담 및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담 신청(02-735-8994, https://d4u.stop.or.kr)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공개시설)

대상	- 성폭력 피해자 · 피해자 가족 구성원
기능	- 피해자·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시설 내 보호(숙식 제공), 자립 자활 교육, 취업 정보의 제공, 의료기관 이용 연계, 상담 지원(사례관리), 법률지원, 수사기관 조사·법원 증인 신문에 동행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 지원,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운영	- 24시간 365일 무휴
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에 이용 문의

시설유형	대상 및 입소(추가연장)기간
일반	- 일반인 피해자 대상 - 1년 이내 /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장애인	- 2년 이내 /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1회당 2년 이내) - 장애인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 심리상담 등 제공
특별지원	- 19세 미만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 숙식, 심리상담 등 제공 - 초·중·고·대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확정자 포함) - 19세가 될 때까지 /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외국인	- 외국인 성폭력피해자 대상 - 1년 이내 /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장애인 포함)	- 일반·장애인 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자활 교육, 취업 정보 등 제공 - 2년 이내 / 입소자가 취업 및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 중인 경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대상	- 강력범죄(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폭행), 디지털 성범죄, 과실치사상 수사상 또는 법적으로 입증된 피해자	
기능	- 피해자 지원은 해당 센터 또는 검찰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됨	
	- 지원요청 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심의 대상으로 선정 가능	
	〈구비서류〉	
	- 피해자 증명 문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 공소장, 판결문 등	
	- 피해자 본인일 경우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관계 증명확인서 등	
	- 지원신청서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신청서, 반환확인서, 간병확인서, 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등	
	심리지원	- 긴급구호상담, 스마일센터 연계 기관 협력을 통한 심리치료 지원
	법률지원	- 법정 동행, 재판 모니터링, 법률 자문 지원
	주거지원	- LH 주거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스마일센터 임시거주 연계
	경제지원	-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실비, 긴급생계비, 간병비 및 ·돌봄비, 취업지원비, 학자금, 장례비
	- 검찰청 범죄피해구조금 연계 : 사망·장해·중상해(2개월 이상) 시	
운영	- 9시~18시, 월~금요일,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방문 상담 신청 예약	
문의	- 국번 없이 1577-1295 - (방문 상담 및 제출 신청)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번호 참조	

▶ **스마일센터**

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폭행 등)
기능	- 피해자 및 보호자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 평가·치료, 법률지원, 임시 보호 (센터 내 생활관 입소)
운영	- (전화접수 및 상담) 24시간 (등록 면담, 심리치료) 9시~18시, 월~금요일
문의	- 국번 없이 1577-1295

▶ **인터넷 피해 구제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물, 댓글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자
주요 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모욕 또는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 (인격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 - 정보통신망으로 유통 중인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 관련된 분쟁조정(심의) ※ 성(性) 관련 불법 촬영 정보 및 성(性)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는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 전담 처리 - 국내·외 사업자에게 신속한 시정 요구(삭제, 접속차단) 및 자율규제 요청

	<p>〈심의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성적 불법촬영정보, 허위영상정보, 피해자 관련 신상정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준하는 불법·유해 영상물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심의 및 시정 요구 ※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불법정보(성적인 정보, 권리침해 정보 등)는 소관 부서로 이관될 수 있음</p>	
	통신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로,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 상담 안내 -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범죄 관련 정보 등 - 신고 시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신고 처리 가능 <p>※ 개인정보(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등), 신고주소·제목·내용 증거 자료</p>
	인터넷 피해 구제	<p>명예훼손 분쟁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의 사람들에게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초상권 침해 정보 등 ※ 인터넷 악성 게시물·댓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인격권)침해 정보
		<p>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침해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번 없이 1377(연중 24시간, 홈페이지(http://remedy.kocsc.or.kr)) -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상담은, 전화 1377 및 비공개 상담 챗봇 이용 ※ 카카오톡 채널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신고상담톡’ https://pf.kakao.com/_qxltUxb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신청요건 확인 후 접수되며, 필요시에 추가자료 제출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8조의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5조의2, 제36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5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시행령 제30조의 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15호(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 불법촬영물·청소년 유해 정보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기관 및 단체

대상	- 불법촬영물 등에 의한 피해자, 불법촬영물 등의 목격자
주요 내용	- 불법촬영물 등에 의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각종 포털, 인터넷방송, 웹하드 업체 등에 신고 및 삭제요청, 각종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및 삭제요청 대행
신청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 참조(https://kcc.go.kr)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15호(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2) 교육기관 (학교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인권 보호 및 외부 전문기관 연계

유형	지원내용
위(Wee)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운영.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지원
가정형 위(Wee)센터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 교육기관
병원형 위(Wee)센터	고위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치료, 대안교육과정 운영, 전문 상담 및 심리검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위(Wee)닥터	학교 현장에서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 학교 소속 전문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화상 자문 지원

학교

- 피해학생 일상 관찰 및 보호 지원
- 위(Wee) 클래스 등 피해학생 안전 및 보호 지원, 사후 관리
- 학적 관련 처리 지원

유형	지원내용
위(Wee) 클래스	단위 학교에서 운영.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 치유,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3)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

피해자 전담 경찰관

- 전국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되어 주요 강력범죄 발생 초기 위기 개입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의 조력자 역할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위기개입·지원·대응팀)

- 심리학 전공자 및 관련 분야 경력 경찰관으로, 각 시·도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되어 강력범죄 발생 초기 피해자 전문심리평가 및 상담, 심리적 응급처치 실시로 피해자 안정 지원

4) 법률지원

기관	역할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 무료법률지원 :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 - 02-883-9285 / crisis119@hanmail.net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안내 - 요청 시 지방검찰청에 신청
진술조력인 지원 제도	- 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통해 조사 시 의사 소통 중개·보조(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의무적 고지)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관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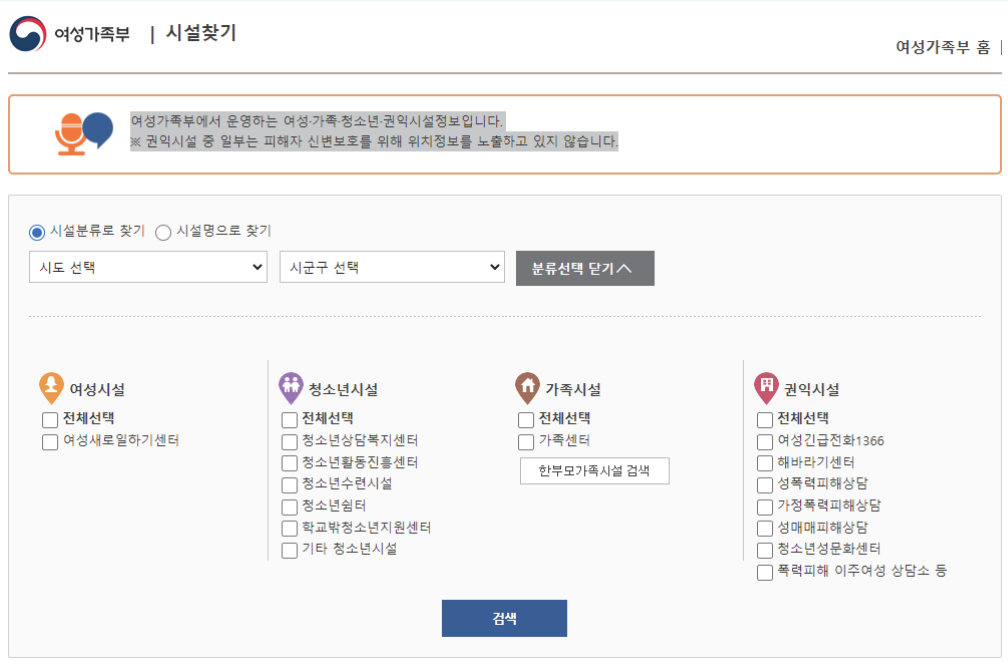
5)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기관	역할
광역/지역 전담 의료기관	- 신체적 정신적 외상 치료 및 검사 - 신속 의료지원 및 판단(소견서/진단서)
일시보호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 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 가능성이 커 응급, 즉각 분리 조치 시 현재 생활 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18세 미만 피해 대상 지원 -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생활, 교육, 정서 지원,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 등
아동양육시설/그룹홈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취업 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청소년쉼터	- 가출 및 위기 상황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관련 지원 -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및 중증 정신질환 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 통역·번역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 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심리검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운영 등
종합사회복지관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및 자활사업 등) 실시
지역아동센터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지역사회 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이해
2.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대화 및 지원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제도의 이해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원 기관 안내

Tip) <여성·가족·청소년·권익 지원시설 정보>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찾아 피해자 주변의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음

(http://www.mogef.go.kr/inc/fs_fsc_s003.do?mid=fsc300&facCd=msa005c)



여성가족부 | 시설찾기 여성가족부 홈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가족·청소년·권익시설정보입니다.
※ 권익시설 중 일부는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위치정보를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분류로 찾기 시설명으로 찾기

여성시설
 청소년시설
 가족시설
 권익시설

전체선택
 전체선택
 전체선택
 전체선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한부모가족시설 검색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
 가정폭력피해상담

기타 청소년시설
 성매매피해상담
 청소년성문화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정책정보>인권보호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정책자료실>주제별 정책자료)인권보호,(22.6.3.)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VII

부록



[001]

상담일지

Ⅶ

상담일	20	사례번호			
내담자		회차	회	상담자	
상담방법	① 방문 ② 전화 ③ 인터넷 ④ 기타				
상담내용					
* 피해자 주 호소 내용(육하원칙에 맞춰서) * 요청 사항 등					
* 내담자가 제3자, 대리인일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제시					
차기 상담일시 : 년 월 일 (요일) 시					



[003]

민감정보처리 동의서(신고인)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민감정보 처리목적] 신고사건 처리

[민감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및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민감정보 내용] 신고사건 내용 및 신상정보

[민감정보 처리의뢰부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고충상담원

위 사항에 대해 고충상담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004]

전문기관 연계 의뢰서

작성일 : 20 . . . (요일)				
의뢰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연계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접수정보	일자	20 . . . ()	경로	전화 / 게시판 / 내방 등
피해자 정보	이름(성별)	()	나이	
	소속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피해내용 (복수선택)	<input type="checkbox"/> 강간/유사강간/준강간 <input type="checkbox"/> 성추행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input type="checkbox"/> 2차 피해(관련자 회유, 협박/고용상 불이익/소문 등) <input type="checkbox"/> 성차별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성범죄()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건 내용	(기본정보) (주요 피해) (사건 직후 조치) (피해자 현재 상황) (피해자 요구사항) (상담원 조치사항) (향후 진행방향)			
의뢰 요청사항				
비고				

[005]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 제출: 학교→ 교육지원청 해당부서, 도교육청 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담당자(직급)	○○○ 부장	
연락처	○○○-○○○-○○○○	
수사기관 신고일자 (학생 피해의 경우 신고 의무)	117	112
	년	월 일

□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응답값
시점	·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특정일 (날짜: 2025-00-00) <input type="checkbox"/>
		기간 (기간: 2025-00-00 ~ 2024-00-00) <input type="checkbox"/>
		특정불가 <input type="checkbox"/>
	· 사건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2025-00-00)
	· 사건 통보일	날짜 기재(2025-00-00)
기관명	· 사건발생기관명	
사건 유형	· 사건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각급학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 학교 설립 구분	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 학교 급	초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고 <input type="checkbox"/>
		특수 <input type="checkbox"/>
		각종 <input type="checkbox"/>
	· 기관의 장애 의한 사건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 (1인 <input type="checkbox"/> , 2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1인 <input type="checkbox"/> , 2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구분	내 용		응답값	
· 행위자 - 피해자 관계 (중복 가능)	기관장-하급자		<input type="checkbox"/>	
	상급자-하급자		<input type="checkbox"/>	
	하급자-상급자		<input type="checkbox"/>	
	동료		<input type="checkbox"/>	
	교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생-교사		<input type="checkbox"/>	
	학생-학생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 행위자(피신고인)		· 피해자	
	교장 <input type="checkbox"/>	행정실장 <input type="checkbox"/>	교장 <input type="checkbox"/>	행정실장 <input type="checkbox"/>
교감 <input type="checkbox"/>	행정직 <input type="checkbox"/>	교감 <input type="checkbox"/>	행정직 <input type="checkbox"/>	
교사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교사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사 <input type="checkbox"/>	졸업생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사 <input type="checkbox"/>	졸업생 <input type="checkbox"/>	
방과후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방과후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직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직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중복 체크 가능				
성폭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input type="checkbox"/>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input type="checkbox"/>	성학대(아동학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언어적 <input type="checkbox"/>	시각적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성범죄				
<input type="checkbox"/>	불법촬영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유포 <input type="checkbox"/>	사진합성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그루밍 <input type="checkbox"/> 사이버공간 괴롭힘 <input type="checkbox"/> 유포협박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스토킹 <input type="checkbox"/>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input type="checkbox"/>				
공연음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행위자 - 피해자 성별	남성-여성		<input type="checkbox"/>	여성-남성 <input type="checkbox"/>
	남성-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여성 <input type="checkbox"/>
	남,여-여성		<input type="checkbox"/>	남,여-남성 <input type="checkbox"/>
	남성-남,여		<input type="checkbox"/>	여성-남,여 <input type="checkbox"/>



구분	내 용	응답값	
		남,여-남,여 <input type="checkbox"/>	
	• 수사기관 신고 (단, 학생 피해의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고 (신고일 날짜 :) <input type="checkbox"/>	
		신고 예정 <input type="checkbox"/>	
		미신고 (사유: 피해자 의사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보호 조치 사항	•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 행위자와 분리 여부 (예시) 행위자 업무 공간 이동, 행위자 전보, 피해자 휴가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조치예정 <input type="checkbox"/>	
		행위자 업무공간 이동 <input type="checkbox"/>	
		행위자 전보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휴가 <input type="checkbox"/>	
	•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여부 (예시)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외부기관 연계	기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조치예정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의료지원 <input type="checkbox"/>	
법률지원 <input type="checkbox"/>			
외부기관 연계 <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 (사건 신고·접수 개요 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으로 처리하여 300자 미만으로 기재		
기타	외부기관(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 사건처리상황, 언론보도사항, 2차 피해 관련 사항 등 100자 미만으로 기재하여 작성(익명처리 동일)		

[006]

출석 통지서

문서번호 : 문서 발송 번호 기재				
수신대상 : 관련인 성명, 소속, 주소 등 기재				
사건번호				
대상자 (참고인, 신고인, 피신고인)	성명		소속	
신고사유	* 참고인에게는 생략			
의견진술을 요하는 사항				
근거				
<p>1. 위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p> <p>2. 사건의 공정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출석일시: 년 월 일 시</p> <p>나. 출석장소:</p> <p>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필히 사전 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p> <p>4.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신고인의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p> <p>5.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진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 조사위원회 ※ 예시</p>				
문의할 곳	Tel.		E-mail	



[007]

서면 진술서

관련자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명(보호자성명)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교의 사실확인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성고충 사안에 대한 의견				
요구 사항				
기타 사항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 ○○○조사위원회 귀중 ※예시				

[008]

비밀유지 서약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본인은 ()으로서
20 년 월 일에 신고된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신고건에 관하여
「〇〇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〇〇조에 의거하여
사건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009]

Ⅶ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신청서

당사자	신고인 (피해자)	성 명		소속		
		성 별		직급		
		연락처				
		전자우편				
	대리인 ※ 대리인 신청 시	성 명		소속		
		성 별		직급		
		연락처				
		전자우편				
	피신고인 (행위자)	1	성 명		소속	
			성 별		직급	
		2	성 명		소속	
			성 별		직급	
3		성 명		소속		
		성 별		직급		
피해 사실	<p>구체적 피해 사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행동)) 및 신청 취지 등을 기재(문제 되는 행위, 지속성 여부, 목격자나 증인 유무 등) ※ 피신고인(행위자)이 추가로 있을 경우 관련 양식 추가하여 작성 가능</p>					
신청 취지 (요구 사항)	<p>피해 관련 요구사항 ※ 성희롱·성폭력 중지, 징계 등 인사 조치, 성희롱·성폭력 사과와 재발 방지 등</p>					
조사 희망 일시·장소	<p>▶ 일시: (1회) 2025.5.20.(화) 14:00 (2회) 2025.5.23.(금) 17:00 ▶ 장소: 소속교 보건실, 소속교 상담실, 교육지원청 등</p>					
<p>위 신청인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관련 조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중</p>						

[010]

사실확인 문답서(피신고인)

일시 :

장소 :

1) 이름, 소속

〈답〉

2) 피신고인은 ○○○○년 ○월 ○일 (장소) ○○에 참가한 사실이 있나요?

〈답〉

3) 피신고인은 이 ○○자리에서 신고인에게 ~한(자세한 사건 내용)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 이때 사건내용을 자세히 먼저 묻기보다는, 간략하게 말하게 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그 때 ○○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답〉

5)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열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이 없으며 오거나
증감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확인 시간, 문답서 열람 시간

피신고인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011]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

1	접수일자	20 년 월 일		담당자	
2	피해자	성명		성별	
		직급 (직위)		전화번호	
3	행위자	성명		성별	
		직급 (직위)		전화번호	
4	보호조치 여부 및 내용	피해자			
		행위자			
5	신고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어떻게			
6	진술 요지	피해자	※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정리		
		행위자	※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행위자 진술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정리		
		참고인	※ 참고인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7	사실확인 진행 경과 및 참고사항	※ 신고 경위, 사실확인 진행 경과 및 관련 사항, 당사자의 학교 내 관계 및 업무관련성 등 참고사항 등을 작성			
※ 담당자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					

[012]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촉(임명)장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위촉(임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사람을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조에 의거하여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인)



[013]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조에 의거하여
제○○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년 월 일 시
2. 장소:
3. 안건:
4. 사안개요(사안 번호,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 사안 심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안개요 기재
- * 심의대상 사안이 수 개일 경우 모두 기재

년 월 일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인)

참고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업무담당자(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해당 출석 안내문,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진술의견서(별지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로
심의위원회 회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5]

성고충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신청인	소속학교	직급/ 학년·반	성명	(학생인 경우) 보호자 성명
	주소			
신청내용	기피대상자			
	신청이유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서명 또는 인)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귀중				
[참고] 해당 양식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함				

[016-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 사안번호: ()학교 2025-()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신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가해자가 학생이 아니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장 귀중</p>				

[참고]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서(본 양식)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016-2]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피해자가 학생이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소속학교	직급/ 학년·반	성명	보호자 성명
신청내용	신고 내용			
	미개최 신청 사유			
해당 사안에 따른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동의합니다.				
20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017]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20 학년도 제 회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 사안 번호:
<p>1.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 분</p> <p>2. 장 소 :</p> <p>3. 참석자 :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간 사 ○○○ 교 사 ○○○ 학 생 ○○○ 학부모 ○○○ 학부모 ○○○</p>
<p>4. 회 순</p> <p>1) 개회</p> <p>2) 심의위원회 진행 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참석자 소개</p> <p>3) 사안보고 - 사실확인 진행 및 결과 보고</p> <p>4) 피해자 확인 및 질의응답</p> <p>5) 행위자 확인 및 질의응답</p> <p>6) 성희롱·성폭력 성립여부 및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p> <p>7) 폐회</p>
<p>5. 상정 안건</p> <p>- ○○○의 사안 -</p> <p>사안개요</p>
<p>6. 회의 내용(발언 요지)</p> <p>○○○ 위원</p> <p>○○○ 위원</p>



7.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구분	결정사항	표결내용
성희롱·성폭력 성립여부	(예) (00년 0월 0일 △△△에서 □□□의 “~” 발언에 대한 성희롱 성립 여부	성립 (만장일치)
	(예) 동료 교직원에 의한 2차 피해 성립 여부	불성립 (성립2인, 불성립5인)
피해자 보호조치	(예) 심리상담 연계	
재발방지대책	(예) 전수조사(실태조사) 실시	
	(예) 예방교육 내 디지털 성범죄 내용 포함 및 성희롱 성차별 발언에 대한 내용 포함	
	(예) 상담창구 접근성 강화	
작성자 : (인)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장 (인)		

[018]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나리오(예시)

1.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주세요. (간 사)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 교육청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에 의거, ○○○○학교 성희롱 예방지침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년도 제○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되 회의 종료 시까지 성원 유지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 학교 성 고충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성희롱 사안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간 사) 성고충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A 학교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1p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를 위원장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해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첫째 성희롱·성폭력 여부(2차 피해 포함) 판단,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셋째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에 관한 사항 등 -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의 세 가지 심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심의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 심의가 끝나고 서약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폐회와 동시에 전량 회수됩니다. -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한 심의 결과를 각각 학교장,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위원장) 간사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위가 있는 ○○○의 성희롱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안건입니다.	



절차	세부진행발언	특이사항
<p>제척, 기피, 회피 안내 (필요시)</p>	<p>(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p> <p>(위원장)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 심의에서 제척되며, 관련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p> <p>▶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사와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p>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p>	<p>회피 시 위원 정족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척, 회피, 기피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함</p>
<p>주의 사항 전달</p>	<p>(위원장)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p> <p>첫째, 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p> <p>둘째,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p> <p>셋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은 각각의 성희롱·성폭력 사안들이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양상을 띠는 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다른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p> <p>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신고인·피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등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고충심의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자·가해자 및 신고자와 참고인과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 등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p>	

2. 사안 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안 보고	<p>(위원장) 다음은 사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사안 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서는 사안의 경과 및 사안의 내용,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확인서 등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조치 결정을 위해 관련자에게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p> <p>(간 사)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 사) 사안 보고 ▶ 사안 번호 20 〇〇-〇〇 건의 경과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고충처리기구 사실확인 결과보고서를 정리하여 보고) ▶ 20 〇〇. 〇〇. 〇〇. 성희롱 신고 사안 접수하여, ~~~ *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사안 개요, 진행 상황, 중점 심사 사항 등) ☞ 기초 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A, 및 B가 모두 인정한 사실)은 ~이며, ☞ A 및 B의 상반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측 주장 및 목격자 진술은 ~입니다. - B 측 주장 및 목격자 진술은 ~입니다. ☞ 기타 진단서, 문자 내용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외부 전문가위원이 보고할 수 있음) ▶ 이상입니다.</p> <p>(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한 파악을 위해 [사실확인 결과보고서]를 숙지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숙지 후]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심사 자료 등 관련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간사)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쟁점 사안과 관련 학생·보호자 질의응답 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p> <p>(주요 쟁점과 논의사항 협의)</p> <p>(위원장) 주요 쟁점 사안은()으로 요약됩니다.</p> <p>위원님들께서는 관련자 질의응답 시에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로 해당 내용에 관해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p>	



3. 신고인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질의응답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입장안내	(위원장) 먼저 신고인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입장시켜주세요. (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신고인 회의 장소 입장
기피 신청과 유의 사항 안내	(위원장)(간사) -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 신청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으로 당사자분의 출석 진술을 듣기 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하면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가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은 신고인 측이 '기피'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함. 기피 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사안 설명 및 사실 여부 확인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 사) 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진술) (위원장) 그동안 사실확인 절차에서 진술한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조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각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위원님께서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고인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께서는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신고인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고인 진술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위원장) 이상으로 신고인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칩니다	
사후 과정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절차나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피해 관련 측의 귀가 안내 시간이 길어지면 정회 가능

4. 피신고인 측 사실확인 · 의견진술 · 질의응답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입장안내	(위원장) 다음은 피신고인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피신고인을 입장시켜 주세요. (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피신고인 회의 장소 입장
기피 신청과 유의 사항 안내	(위원장)(간사) - 먼저, 절차에 따라 기피 신청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으로 당사자분의 출석 진술을 듣기 전에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하면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가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신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은 피신고인 측이 '기피'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함. 기피 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사안 설명 및 사실 여부 확인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피신고인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 사) 사실확인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는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그동안 사실확인 절차에서 진술한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조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각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피신고인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께서는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신고된 행위 사실 확인(특히, 신고인 주장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피신고인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신고인 진술) 이상으로 가해 관련 측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칩니다	
사후 과정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절차와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피신고인 측의 귀가 안내



5. 참고인 진술(필요시)

* 조치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참고인 질의응답	<p>(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간사는 참고인을 입실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p> <p>(참고인과의 질의 응답)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 없는 경우] (간 사) 이 사안에 대한 참고인으로 ○○○와 ○○○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였습니다. 두명 모두 오늘 이 자리 참석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A학교 사실확인 결과 보고서 1p]으로 이를 대체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및 사안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사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p>	참고인이 많은 경우 순차적으로 입장

6. 성희롱·성폭력 여부 심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논의와 의결	<p>(위원장) 먼저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실 확정). 또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본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안별로 자유로이 토론 후 기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를 기표하여 해당 여부를 결정짓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p> <p>○○○의 사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들 간 사실확정 여부 논의) (위원장) 20○○-01건 신고 내용 중 () 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로 판단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위원들 간 성희롱·성폭력 여부 논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 20○○-01건에 ○○○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가 ○○○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 20○○-0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가 ○○○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p>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등 필요한 의결 진행 후 회의 종료 (심의결과 통보서는 작성하여야 함)

7.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등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피해자 보호조치 의결</p>	<p>(위원장)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조치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p> <p>(간 사)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조치에는 ***** 등이 있습니다.</p> <p>(위원장) 다음은 피해자 ○○○의 보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p> <p>(위원들 간 상호 논의)</p> <p>(위원장) ○○○의 보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 조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p> <p>(위원장) 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제 조치를 의결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p>	
<p style="text-align: center;">재발방지대책 등 심의</p>	<p>(위원장) 다음으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는 관련 기관(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컨설팅 신청, 2차 가해 혹은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p> <p>(위원들 간 협의)</p> <p>(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p>	<p>※ 필요시 가해자 교육 이수 권고 가능</p>

[020]

심의결과 통보서

<p>[일시] 20 . . (요일) 〇〇:〇〇</p> <p>[장소]</p> <p>[사안] 2000-1</p> <p>[안건] 〇〇학교 직위 〇〇〇의 직위 〇〇〇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여부</p>	
<p>[사안 개요]</p> <p>1. 신고인: 〇〇〇</p> <p>2. 피신고인: 〇〇〇</p> <p>3. 신고 내용</p> <p> 행위 1: ~</p> <p> 행위 2: ~</p>	
결정사항	특이사항
“~~” 발언에 대한 성희롱 해당	피해자 보호조치, 심리상담 지원 연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p>〇〇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회 심의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p> <p>〇〇 학교장(인)</p>	



[021]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보고

〈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재발방지대책 보고는 생략할 수 없음. 단, 피해자 신원 보호 철저〉

(※ 제출: 학교→ 교육지원청 해당부서, 도교육청 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담당자(직급)	○○○ 부장	
연락처	○○○-○○○-○○○○	
보고일시	2025년 ○월 ○일	
수사기관신고일시 (학생 피해일 경우)	117	112
	*해당 수사기관 동그라미	
	○○○년 ○월 ○일	

□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응답값
사건 통보 여부	·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여부	통보 <input type="checkbox"/>
		미통보 <input type="checkbox"/>
	·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유	피해자 의사 <input type="checkbox"/>
		착오 또는 누락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유 기재:) <input type="checkbox"/>
시점	· 사건 발생일(최초 발생)	특정일 (날짜: 2024-○○-○○) <input type="checkbox"/>
		기간 (기간: 2024-○○-○○ ~ 2024-○○-○○) <input type="checkbox"/>
		특정불가 <input type="checkbox"/>
	· 사건 인지일 ※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2024-○○-○○)
· 재발방지대책 제출일 ※ 사건 인지일부터 3개월 이내	날짜 기재(2024-○○-○○)	
기관명	· 사건발생기관명	
사건유형	· 사건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각급학교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 학교 설립 구분	공립 <input type="checkbox"/>
		사립 <input type="checkbox"/>

구분	내 용		응답값		
	· 학교 급		초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고	<input type="checkbox"/>	
			특수	<input type="checkbox"/>	
			각종	<input type="checkbox"/>	
	· 기관의 장애 의한 사건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 (1인 <input type="checkbox"/> , 2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1인 <input type="checkbox"/> , 2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 행위자 - 피해자 관계 (중복 가능)		기관장-하급자	<input type="checkbox"/>	
			상급자-하급자	<input type="checkbox"/>	
			하급자-상급자	<input type="checkbox"/>	
			동료	<input type="checkbox"/>	
			교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생-교사	<input type="checkbox"/>	
			학생-학생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 행위자(피신고인)		· 피해자		
	교장 <input type="checkbox"/>	행정실장 <input type="checkbox"/>	교장 <input type="checkbox"/>	행정실장 <input type="checkbox"/>	
	교감 <input type="checkbox"/>	행정직 <input type="checkbox"/>	교감 <input type="checkbox"/>	행정직 <input type="checkbox"/>	
	교사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교사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사 <input type="checkbox"/>	졸업생 <input type="checkbox"/>	기간제교사 <input type="checkbox"/>	졸업생 <input type="checkbox"/>		
방과후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방과후교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직 <input type="checkbox"/>	()	교육공무직 <input type="checkbox"/>	()		
· 행위자 - 피해자 성별		남성-여성	<input type="checkbox"/>	여성-남성	<input type="checkbox"/>
		남성-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여성	<input type="checkbox"/>
		남,여-여성	<input type="checkbox"/>	남,여-남성	<input type="checkbox"/>
		남성-남,여	<input type="checkbox"/>	여성-남,여	<input type="checkbox"/>
		남,여-남,여	<input type="checkbox"/>		
· 위계·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 (단, 학생 피해의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고 (신고일 날짜 :)	<input type="checkbox"/>		
		신고 예정	<input type="checkbox"/>		



구분	내 용	응답값
		미신고 (사유: 피해자 의사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 사항

구분	내 용	응답값
사건상담, 신고 및 사실확인	·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서 접수일	날짜 기재(2024-00-00)
	· 사실 확인 기간(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30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30일 초과(일) <input type="checkbox"/>
	· 사실 확인 방식	기관(고충상담원, 조사위원회 등) <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 <input type="checkbox"/>
		상급기관 <input type="checkbox"/>
		인권보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 사실 확인 진행 상황 피해자 고지 여부	고지 <input type="checkbox"/>
		미고지 <input type="checkbox"/>
· 사건 수사기관 수사 여부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사건 심의	·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input type="checkbox"/>
		미개최 <input type="checkbox"/> (사유 기재:)
	· 개최된 심의위원회 유형 (중복 가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교권보호위원회 <input type="checkbox"/>
		학생생활교육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성고충심의위원회 <input type="checkbox"/>
	·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여부	참여 <input type="checkbox"/>
		불참 <input type="checkbox"/> (사유 기재:)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인정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input type="checkbox"/>
		타비위 행위로 판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구체적 사항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결과 2차 피해 해당 여부	인정 <input type="checkbox"/>	

구분	내 용	응답값
		불인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 이외 의결 내용(복수 체크 가능)	피해자 보호 조치 권고 <input type="checkbox"/>
		공간분리 <input type="checkbox"/>
		유급휴가 <input type="checkbox"/>
		배치전환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재)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행위자 조치 사항 권고 <input type="checkbox"/>
		징계 <input type="checkbox"/>
		근무장소 변경 <input type="checkbox"/>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재)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2차 피해 예방 또는 중지 (구체적 사항 기재) <input type="checkbox"/>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조치 사항 (구체적 사항 기재) <input type="checkbox"/>	
	· 심의결과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통지 여부	통지 <input type="checkbox"/>
		미통지 <input type="checkbox"/>
	후속 조치 *예정인 사항도 포함	· 피해자 조치 사항 (복수 체크 가능)
유·무급휴가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상담/의료/법률 지원기관 연계 <input type="checkbox"/>		
· 행위자 조치사항 (복수 체크 가능)		징계 <input type="checkbox"/>
		부서/근무장소 변경 <input type="checkbox"/>
		업무배제/대기발령/직위해제 <input type="checkbox"/>
		인식개선 교육 <input type="checkbox"/>
		상급기관에 행위자 인사조치 요청 <input type="checkbox"/>
· 2차 피해 방지 등 기타 조치사항		(구체적 사항 기재) 예) 전직원 폭력 예방교육 실시 2차 피해 방지 홍보 강화



□ 재발방지 강화 방안

구분	내 용	응답값 (최근 1년 기준 현황 기재)		응답값 (사건발생 계기 개선 계획)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 연간 기본계획 수립	수립	<input type="checkbox"/> (날짜 기재)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 계획 별첨	
		미수립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예방교육 실시/횟수	실시	<input type="checkbox"/> (몇 회)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미실시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직원 참여율	90% 이상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80~90%	<input type="checkbox"/>			
		70~80%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70% 미만	<input type="checkbox"/>			
	· 기관장 참여	참여	<input type="checkbox"/> (총 ○회 중 ○회)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불참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고위직 참여율(%)	90% 이상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80~90%	<input type="checkbox"/>			
		70~80%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70% 미만	<input type="checkbox"/>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개정	있음	<input type="checkbox"/> (수립시기 기재)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없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고충상담원 지정		지정	<input type="checkbox"/> (여○명, 남○명)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미지정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이수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미이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고충상담창구 설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종사자 30인 이상일 경우)		설치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상설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비상설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여성 ○명, 남성 ○명)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없음	<input type="checkbox"/>	
· 기타 개선 계획 (해당될 경우 기재)				개선방안 있음	<input type="checkbox"/> (세부 기재) * 자율 기재 예) 실태조사 실시, 컨설팅 실시, 징계 양정 강화 등	
			없음	<input type="checkbox"/>		

※ 개선방안 관련 참고자료는 별첨해주시기 바랍니다.

[022]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일반 문의 : 성폭력방지과 02-2100-6394, 6429, 6392)

(사건대응 문의 : 성폭력방지과 02-2100-6164, 6166, 6168, 6169)

(교육 관련 문의 :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5)

※ 본 지침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마련을 위한 안내이고, 각 기관은 본 내용을 참조해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지침을 제정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〇〇〇 기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〇〇〇기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〇〇〇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〇〇〇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 지침의 적용대상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과 소속 학생이 포함되어야 함

○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적용범위에 넣음으로써 기관이 해결하여야 할 성희롱·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해서 명시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근거한 성희롱 개념을 지침에서 명시

- *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성폭력 개념 명시

- * 성폭력의 세부 유형은 '제5장 참고자료 -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 조항 및 예시' 참고

○ 「여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한 2차 피해 개념 명시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의 책무)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관장에게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기관장에게 피해자 보호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조직 구성원에게 천명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예방 효과를 높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구제절차를 안내
- 성희롱·성폭력 방지에 있어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음
- 고충상담원 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의 수립 필요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상급기관은 산하 공공기관(「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항을 점검(상급기관 예방지침에 명시)
 - 예방교육 관련 계획수립 여부,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참여율,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방지조치, 사건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점검
- 공공기관의 기관장 또는 고위직 임원이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상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 상급기관은 세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기관장 또는 고위직 임원이 행위자인 경우 기관에서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이관 받아 진행하고 조사 이후 절차도 지휘·감독하도록 함
- 조사를 이관할 경우 피해자, 행위자에게 알려 사건처리 현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상급기관은 사건 발생기관과 사건 진행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함께 노력하도록 함
- 상급기관은 조사를 이관 받을 담당 부서를 지침이나 연간운영계획 등에 명시



(예 : '고충상담부서',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 부서' 등)

〈공직유관단체의 상급기관 예방지침 수정〉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 ① ○○○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소속 공직유관단체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사건의 조사를 ○○○기관으로 이관한 경우, ○○부서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 이행하는 이후의 조치도 지휘·감독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부서 (○○노조, ○○성희롱·성폭력 전문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관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명시

-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부속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고충상담창구 설치 근거 명시

- 고충상담창구 설치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등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소속 직원의 복무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사항이므로 복무담당부서의 소관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고충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여건에 따라 복무담당 부서 외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여성정책 관련 부서, 외부 전문기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상담, 조사 등 사건처리 절차들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담당하는 경우,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고충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하되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지정

- 상시근로자 중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남·녀 구분없이 동일 성으로 2인 이상 지정 가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1인 이상 지정 가능
- 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지사 별로, 또는 사업본부 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할 것

○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은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근무 기관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공간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야 함

- 독립된 공간의 고충상담창구 설치에 대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근무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상담 시 비밀이 보장되는 환경이 되도록 할 것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예시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로 상담과 조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나 기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분리 운영할 경우 각각의 역할분담과 역할수행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로서 고충의 접수·처리·재발방지·교육 및 모니터링(사건처리에 따른 조치 이행사항)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직접적인 대면 내지 전화 상담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담 및 신고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실이나 내용은 고충상담원만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신고센터까지 확대 운영 권고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① ○○○기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기관의 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⑤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의 시기와 횟수를 명시
 -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3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이수하되, 교육기관에 의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이내 반드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함
 - 행위자, 기타 조직구성원이 고충상담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직장 내 성희롱 업무담당자에 대해 부당한 비난, 압박, 강요, 협박 등으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것 금지
- 피해자가 근무 조건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동료와 상담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성희롱·성폭력의 상담과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피해자는 근무 조건 및 불이익을 우려하여 직장 내에서 상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 ①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 ④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소관 부서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방법을 예시하고, 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
 - 교육의 방법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찾기」 등을 활용한 전문가 강의와 기관 내 담당자의 설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관장 훈시 혹은 영상물 시청만으로는 미흡하며 별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예방교육은 양성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해 매년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예방교육 필요
- 업무 및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고객 등에 의한,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방지 및 대처 교육 필요
- 성희롱·성폭력 방지 효과성 제고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및 보호를 위하여 고위직과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 의무 실시
 - * 다만, 종사자 100인 미만인 “공직유관단체와 대학교”는 ’25년 별도 교육 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
- 성희롱 방지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적절한대처를 위하여 학생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권장
- 교육실시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예방교육 실시계획 및 결과는 기관장의 결재를 얻도록 하고 교육 참석자 명단은 서명(날인)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
-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은 구성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



제9조(고충상담)

제9조(고충상담)

-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의 방법 안내

- 상담 시에는 관련 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 피해자가 고충업무 담당부서가 아닌 자신의 상급자나 관리자에게 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고충상담창구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고충상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상담 신청이나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인에게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 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여성가족부로 통보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내 「사건관리시스템」을 통해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통보

* 각급 학교(대학교 제외), 유치원, 어린이집은 p140 첨부 서식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수신)

- 고충상담이나 피해 신고를 받은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또는 대리인)에게 여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하고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이 경우 통보 및 신고 의무는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통보, 신고) 등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할 때 발생함
- 피해자와 행위자가 속한 기관이 다를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행위자가 속한 기관에서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하고, 이 경우 피해자 기관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함
 - ※ 피해자 소속 기관의 협조 등을 통해 피해자 통보 등의 의사 확인 필요
 - ※ 통보 및 제출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위자가 속한 기관이 됨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여성가족부로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성폭력방지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 (참고)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 통보 등의 의사를 확인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 때 기준
-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해당 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
 - ※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성희롱 사건이 여러차례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 여성가족부가 사건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통보된 사건통보서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한 자료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
 - 현장점검 결과 통보받은 시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
-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또는 「형법」 제303조제1항*)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
 -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
 - 이를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성폭력방지법」 제9조제2항, 제38조

제11조(조사)



제11조(조사)

-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〇〇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 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〇〇〇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신청은 상담과 달리 서면 등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신청하도록 하여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함
- 상담 단계에서도 조사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피해자가 처리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함
- 조사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고충상담원이나 별도 조사자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 고충상담원이 조사를 할 수 있음

○ 처리기한을 명시하되 기관내부 절차에서는 사안 처리의 비밀 유지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단기간으로 설정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함을 명시

○ 조사과정에서부터 외부 전문가 등이 조사하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명시

- 기관 관리자는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기관의 안정성과 명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외부전문가 또는 노동조합 등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 위탁한 조사일 경우에도 고충상담원은 기관 내 조사 담당자로서 객관적 사건조사를 위한 지원,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음
-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를 반대하는 경우에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조사가 중지되었더라도 피해자 상담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실시
- 조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서면 등으로 고지해야 함
- 성희롱 관련 각종 서식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정책자료실 - 주제별 정책자료 - 인권보호

제12조(조사결과와 보고)

제12조(조사결과와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13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기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기관의 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도 중요
- 피해자에 대한 ‘관리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외에 보호 의무도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및 공간 분리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혹은 관리자가 피해자 및 조사협조자 등에 대하여 인사, 복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열거
-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
- 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행위자 징계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및 행위자 등 관계자의 신원과 신청 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자치구), 시·도 교육청의 경우 추가
 ⑦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명시
 - 기관 사정에 따라 상설 위원회로 두거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원회의 구성 방식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 심의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고충상담원은 간사로만 참여하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 또한 고충상담, 사건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한 내부구성원, 외부전문가 역시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여 처리의 편향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 제거
- 상시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관은 최소3인(외부위원은 1인 이상)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단, 기관장 포함 5인 이하의 기관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충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질 수 있도록 최소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되 조사 중지 사유 발생, 학생 - 학생 (학폭위 사건)간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조항 추가
 - 기관장이 연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운영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자치구), 시·도 교육청의 경우 수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자치구), 시·도 교육청의 경우 수정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권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방법, 의사·의결 정족수 등을 정할 수 있음

○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해 신고인 등 당사자와 위원 간 기피신청 및 회피 권리 포함

-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 조치 등의 조치도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을 명시

○ 서면 통보 시 통보서에 신고 된 내용, 인정된 내용, 심의결과 등을 명시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조항 수정 및 추가

- 기관장이 연루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를 위해 위원회 조기 소집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00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규정
- 기관장이 행위자일 경우에는 당사자에 인사·복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제17조(징계)

제17조(징계)

-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④ ○○○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증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가 필요하므로 무관용의 원칙 적용 명시 필요
 -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효과 기대
 - 사건에 대한 소문을 확산시키는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임을 주지시키고, 발견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2차 피해에 대하여 예방할 수 있음
-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시 재발방지 교육(특별인권교육)을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성범죄 행위자가 의원면직 등을 통해 징계를 피하려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철저한 성범죄 예방과 엄정 대응 필요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기관의 징계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징계 가능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③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자치구), 시·도 교육청의 경우 추가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방법을 규정

-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은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표준서식에 맞춰 수립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3
-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해 자체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다만, 동일 사건으로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함
-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은 여성가족부에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내 「사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고, 주무부처에도 제출

- * 각급 학교(대학교 제외), 유치원, 어린이집은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수신)
- 여성가족부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제출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관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완 요청 시,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 현장점검 결과 통보받은 시정·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
-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및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 다만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교육감
 - ※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 피해자와 행위자가 속한 기관이 다를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행위자가 속한 기관에서 사건 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하고, 이 경우 피해자 기관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함
 - ※ 피해자 소속 기관의 협조 등을 통해 피해자 통보 동의 의사 확인 필요
 - ※ 통보 및 제출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위자가 속한 기관이 됨
-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성폭력방지법」 제22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감수 및 자문(가나다순)

- 김용화**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인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김채운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서경원 |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자문(가나다순)

- 김하나** |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김영희 | 서강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교수
김현숙 | (前) 스포츠윤리센터 정책실장
김효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연 | 법무법인 마로 노무사
신희남 | 두일초등학교 교감
이은심 | 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장윤경 | 갈등경영연구소 소장

총괄

- 이정희** |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담당 사무관
성해영 |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담당 장학사
남승림 |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담당 장학사
주신영 |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담당 주무관

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

인쇄처 | 나무print (02)877-2787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